



제1편 사업 개요

I. 사업 개요	2
1. 공중위생 관리대상	2
2. 주요 경과	3
II. 2017년 공중위생관리업무 추진방향	4
1. 중요 업무 추진 내용	4
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6
3. 2016년 법령 시행 사항	7

제2편 공중위생영업소

I. 공중위생영업 정의	12
1. 공중위생영업	12
II.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설비기준	16
1. 신고	16
2. 변경신고	18
3. 폐업신고	18
4. 지위승계신고	19
5.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기준	20

제3편 이·미용사 면허 및 업무범위

I. 면허 신청 및 교부	22
1. 면허신청 개요	22
2. 면허교부 절차	23
3. 면허교부 조건	23
4. 면허교부 및 반납	26
II. 면허 재교부	29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29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29
3. 면허 종별 추가 취득에 따른 처리 절차	31

제4편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I.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34
1. 지도·점검	34
2. 행정처분	38
3. 과징금 처분	38
4. 과태료 처분	39
5. 벌칙	41
6. 봉인	42
I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4
1. 운영 개요	44
2. 위촉 및 해촉	44
3. 운영 및 관리	46
4. 행정사항	48
III. 위생교육	49
1. 운영 개요	49
2. 위생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50
IV.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51
1. 실태보고 개요	51

제5편 **舊.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I. 위생처리업 관리	59
II.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	68
III. 수입 위생용품 관리	109
IV. 위생교육	114

제6편 **질의회신**

I. 숙박업	118
II. 목욕장업	142

Ⅲ. 미용업	164
Ⅳ. 기타	177
Ⅴ. 법제처	180

제7편 부 록(서식·참고자료)

I. 관련서식	190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91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192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193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194
[서식 제5호] 진술서	195
[서식 제6호] 고발장	196
[서식 제7호] 게시문	197
[서식 제8호] 봉인물품 보관증	198
[서식 제9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199
[서식 제10호] 봉인 물품대장	200
[서식 제11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201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202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203
[서식 제14호] 명예위생감시원 위촉장	204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서식 제16호]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서식	208
II. 참고자료	209
[참고 1] 국내 미용 관련 학과	210
[참고 2] 아·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 ..	216
[참고 2-2] 아·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	218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현황	226
[참고 4]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228
[참고 5] 아·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232
[참고 6]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234

제 1 편

사업개요



I

사업 개요



1

공중위생 관리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 ※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여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15.12.22.개정, '16.12.23.시행)

나. 舊.공중위생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부칙(제5839호, '99.2.8.) 제3조 관련)

- 위생용품 제조업(2종)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위생용품 제조업

① 세척제

구분(종)	정 의
1종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3종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② 기타 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 일회용의 물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냅킨, 물종이류)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물수건)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

☞ 2018년 중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예정('17.2. 보건복지위 상정)



2

주요 경과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관계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10월)
- 미용업에서 미용업(피부)를 분리·신설('07.4월)
- 숙박업에 객실 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편입하여 숙박업(생활)로 분리('12.1월)
- <손톱 및 가시뽑기> 제1호 과제로 미용업(손톱·발톱) 분리·신설('14.9월)
-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의견을 반영하여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 분리·신설('14.10월)



II 2017년 공중위생관리업무 추진방향

1 중요 업무 추진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 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로 분리 가능
 - 육안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장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 필요
(예 : 각각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식 칸막이를 높게 설치)

나. 미용업종별 위생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1개)을 이수하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다. 미용업(화장·분장)의 세분

- ‘속눈썹 연장술’은 미용업(화장·분장)의 전속적인 업무영역
 - ‘속눈썹 연장술’은 새로운 눈 미용기법의 하나로 속눈썹에 인조가모를 붙여 연장시키는 화장술
 -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미용사(화장·분장) 시험에 속눈썹 제품을 가공하여 표현하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 ※ 적용 기준일 : 2016.9.23.(미용업(화장·분장)의 국가기술자격 최초 합격자 발생일)



라. 영업소 외 출장 아미용서비스 가능 예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5. (생략)

⇒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예시는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 다만, 출장 아미용서비스는 영업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장서비스를 하는 것임



2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가. 추진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다. 평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가능)

라.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마. 평가주기 : 격년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바.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사. 평가항목

- 준수사항·권장사항으로 구분, 준수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 권장사항은 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구성

◎ 평가항목 예시 : 세탁업의 경우

- 준수사항 : 세탁용 약품 보관함 설치, 보관 중인 세탁물의 위생관리 상태
- 권장사항 : 세탁업표준약관 게시, 요금표 게시

3 2016년 법령 시행 사항**주요 개정내용**

- ① 공중이용시설 삭제(환경부에서 통합관리)
- ②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 ③ 위생관리용역업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
- ④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 ⑤ 행정청의 직권말소 신설
- ⑥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함
- ⑦ 이·미용사의 업무보조범위 규정
- ⑧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신설
- ⑨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⑩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⑪ 법 위반 사실 공포 신설
- ⑫ 폐업신고 미이행 시 부과된 과태료 삭제

1. 2015.12.22. 법률 개정사항(2016.12.23. 시행)**◇ 개정 이유**

「공중위생관리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오염물질 및 오염허용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관련 내용을 삭제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안 제6조)

2. 2016.2.3. 법률 개정사항(2016.8.4. 시행)

◇ 개정 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단서 신설)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안 제6조의2 등)
-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7조)
-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 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11조의2제1항).



- 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 하.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 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너.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 더.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러.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 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삭제)

제 2 편

공중위생영업소



I

공중위생영업 정의



1

공중위생영업

가.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청소년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관광진흥법 제6조)

※ 숙박업 관리체계 및 관리부처 다원화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민박 : 「농어촌정비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 숙박업(일반, 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소관 보건복지부



나.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 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종합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2)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련 별표4)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라.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 헤어미용실, 피부미용실(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메이크업샵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2015.7.1 시행)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마.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 드라이크리닝 세탁, 물빨래 세탁, 운동화전문세탁 등

바.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 가정집 실내청소 대행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상 아님



II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설비 기준

1 신고

가. 근거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신고처리 기관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라.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①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지침 서식 제1호 참조)
- ③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⑤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마. 영업 신고 서류 검토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이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

적용대상	같은 영업 금지기간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년	1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1년	6개월

- 이·미이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 정지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도시계획법 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기타 관계법령 등

바. 영업신고증 교부

- 새올행정시스템에 신규업소로 등록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 교부
 -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 시행



2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미용업의 세부 업종간의 변경
 -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 시행

● 제출서류

제출 서류

-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 ②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미 첨부)
-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 처리 : 즉시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되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

3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다. 참고사항 : 폐업신고 간소화(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 관련)

-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두 가지 폐업신고 서식을 함께 제출받아 원스톱으로 처리

4**지위승계신고****가.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아래 절차에 의해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나.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제출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인감증명 제출 예외사항

- ①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 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5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 기준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나. 시설·설비 일반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로 분리 가능
 - 육안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장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 필요
(예 : 각각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식 칸막이를 높게 설치)

제 3 편

이·미용사 면허 및 업무범위



I 면허 신청 및 교부

1 면허신청 개요

가. 신청인 : 본인

나.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다. 신청서류

-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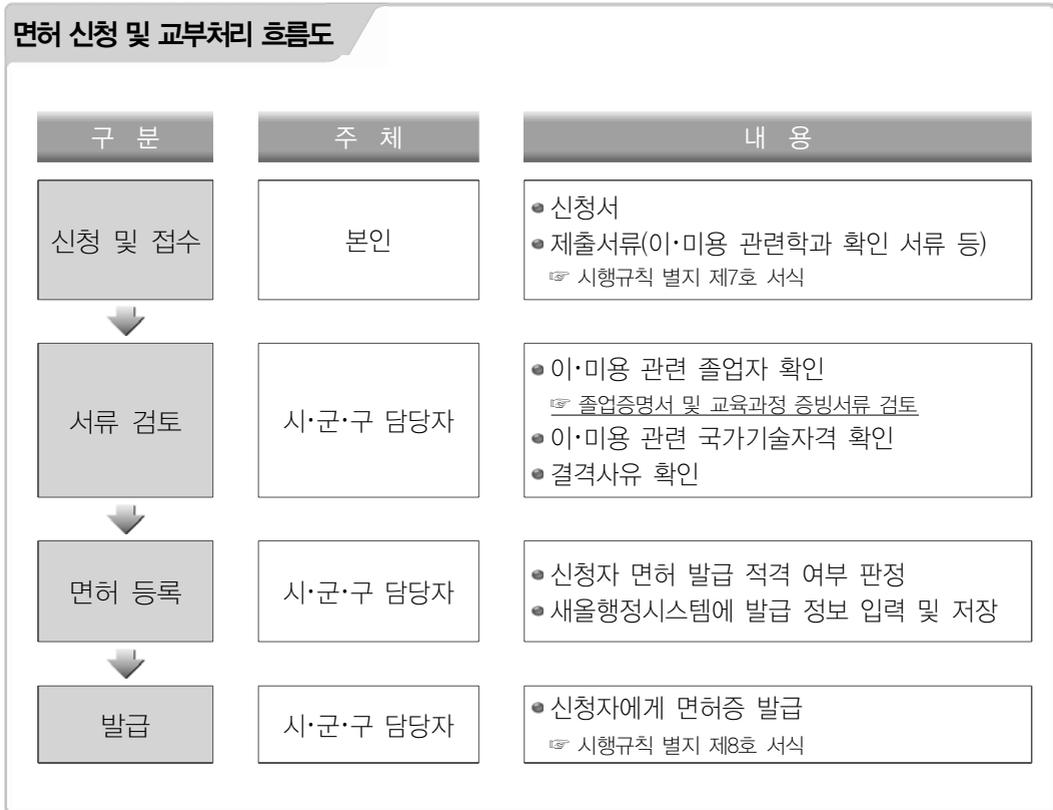
첨부 서류		
구 분	첨부서류	비 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cm×4cm) 	
고등기술학교 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cm×4cm)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수여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cm×4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 '08.6.15 • 학위수여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08. 2.15 이전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 학위등록번호에 '학점'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 확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cm×4cm)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정보 확인



2

면허교부 절차

면허 신청 및 교부처리 흐름도



3

면허교부 조건

가. 면허 신청 조건

- 결격사유(법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 이·미용 관련 학과 졸업(이수, 학위취득)자

- ① 고등학교(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전문대학(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 또는 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1년 이상)
-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미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참고 1」 국내 미용 관련 학과'는 면허 발급시 편의를 위한 표이며, 이 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신청인에게 졸업증명서 및 교육과정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

☞ 학과명만으로는 관련 학과를 알 수 없으므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발급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이용사
- 미용사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별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제2항관련)

자격취득일 국가기술자격명	~ '07.12.31.	'08.1.1. ~ '15.4.16.	'15.4.17. ~ '15.12.31.	'16.1.1. ~
미용사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일반)		헤어, 네일,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헤어
미용사(피부)		피부		
미용사(네일)			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메이크업

나. 면허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 피성년후견인으로 '15.12.22. 개정, '16.12.23. 법 시행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결핵환자(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이법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및 면허대여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별 확인서류

① 피성년후견인

☞ 등록기준지 조회와 성년후견 등기 여부를 병행해야 함

〈민법 개정시행 전·후 확인대상〉

구 분	시행('13.6.30) 以前	시행('13.7.1) 以後	조회기관	근 거
결격조회 요청기관의 확인대상	① 결격사유조회	① 결격사유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②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	가정법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

※ 결격사유 등의 조회가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님을 확인

② 건강진단서

- 발급일 : 최근 6개월 이내
- 발급기관 :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4 면허교부 및 반납

가. 면허증 교부

- 자격별로 면허증 교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면허별 업무범위 고지 ☞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구분	면허종류	업무범위	비고
이용 학과 졸업· 이수자 및 이용자 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 학과 졸업·이수자	미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국 가 기 술 자 격 자	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07.12.31 이전 자격 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08. 1.1~ '15.4.16까지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5.4.17~ '15.12.31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의료기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6.1.1 이후 자격취득자



구분	면허종류	업무범위	비고
미용기능사 (피부)	미용사 (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손질	'08.1.1 이후 자격 취득자
미용기능사 (네일)	미용사 (네일)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15.4.17 이후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메이크업)	미용사 (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16 하반기 이후 자격취득자

속눈썹 연장술

- ① 속눈썹 연장술 :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범위에 해당
- ② 자격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여부

자격취득일 국가기술자격명	'16.9.22.까지 취득자	'16.9.23. 이후 취득자
미용사(일반)	가능	불가능
미용사(피부)	가능	불가능
미용사(메이크업)		가능

* 2016.9.23. : 미용사(메이크업) 합격자 발생일자(공고기준)

나. 면허증 반납

-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명령시(면허정지 기간동안 보관)

* 2016.9.23. : 미용사(메이크업) 합격자 발생일자(공고기준)



별표 1 영문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요청시 처리방법

☞ 영문 면허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문 면허증을 번역하여 공증받도록 안내

(영문 증명 예시)



Dongjak-gu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Tel:82-2 - 820-9204
 Fax:82-2-820-9499

Date : . . .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Barber/ Cosmetologist/ Esthetician*
 중 택)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 (영문이름)
 Sex : *Male / Female* 중 택
 Date of Birth : (생년월일)
 Nationality : 국적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주민등록번호
 Graduated from : (졸업학교영문명 또는 해당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Date of Graduation : (졸업일 또는 해당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National Examination Date passed : (국가자격취득일 또는 해당없음*Not Applicable(N/A)*로 표시)
 License Number : (면허번호)
 Date of Registration : (면허교부일)
 Date of Renewal : (면허재교부일)

Signature : _____ 기관장 영문 사인
Dongjak-gu,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II 면허 재교부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가. 재교부 기관 : 전국 시·군·구

* 면허 최초 발급 관할 또는 현 소재지 관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음

나. 재교부 신청 사유

-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다. 신청서류

- ①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시행규칙 제10호 서식)
- ②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③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의 3×4cm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 절차

- 가. 시·도지사가 발급한 경우
- 나.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다.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가. 시·도에서 발급한 경우

☞ '05.3.3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면허관련 사무가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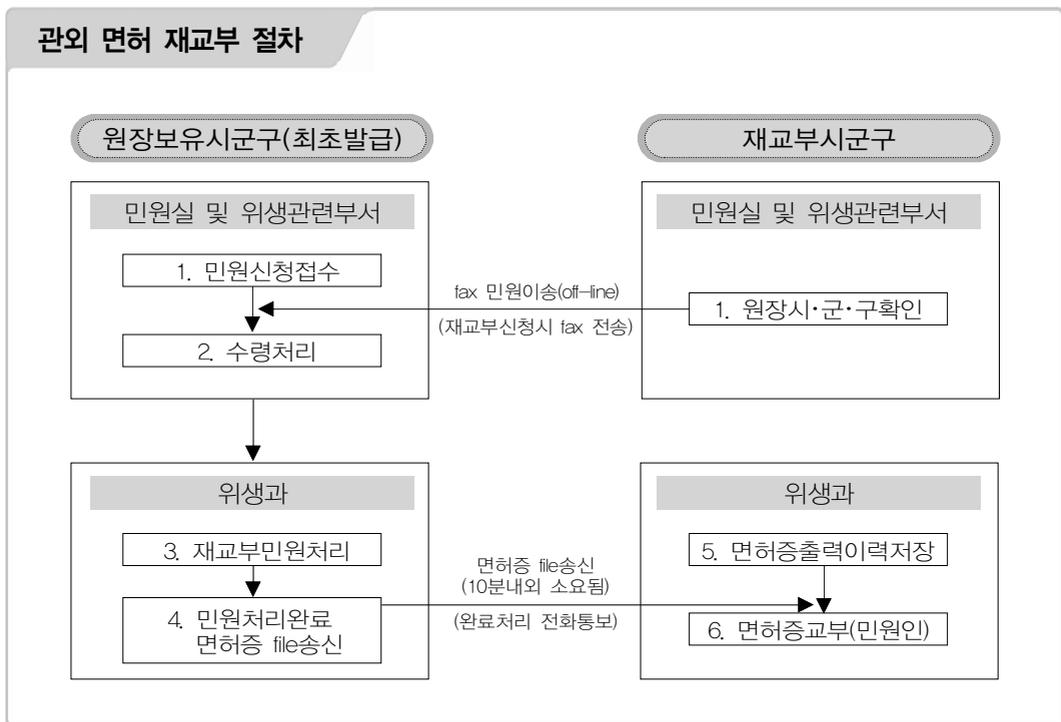
- 시·도 이관 면허 초기자료 및 재교부 내역 등록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최초 면허 번호 그대로 면허번호를 기재(예 : 제 경기 123456호)하고, 시·군·구청장의 관인 날인하여 면허증 재교부
- ※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사용자 매뉴얼(참고 2)에 따라 시행

나.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 등을 검토하여 처리

다.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관외 면허증 재교부)

※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참고2-2)에 따라 시행





시·군·구별 업무 역할

재교부 시·군·구(민원 신청지)	면허 원장보유 시·군·구(면허 최초 발급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부 신청서 확인하여 최초 발급 시·군·구로 팩스 전송 - 최초 발급 시·군·구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이 송신되면 출력하여 교부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일반 문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실이 없음을 확인 - 관인 날인하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재교부 시·군·구로 전송

3

면허 종별 추가 취득에 따른 처리 절차

-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가 1인 1업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허증은 1인당 1장만 발급해야 함
- 따라서, 면허자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면허증을 회수하고 추가로 취득한 자격을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을 재발급 함



예 시

미용업(손톱·발톱) 면허를 가진 자가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업(화장·분장)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미용업(손톱·발톱) 면허증을 회수하고 면허증의 직종에 미용업(손톱·발톱)과 미용업(화장·분장)을 함께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으로 재발급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제 4 편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I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1

지도·점검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나. 점검 준비사항

- 점검표 및 확인서
 - ☞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및 관련 규정집
- 카메라 및 통신장비
- 공중위생감시원증
- 검체수거에 따른 수거증 및 수거에 따른 준비물 등

다. 위생감시 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 공통사항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숙박업 : 숙박업소 청결 등
- 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 불법 감시카메라 설치 등 확인
- 이·미용업 :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여부 등
- 세탁업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세제의 안전관리 등
- 건물위생관리업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라. 위생감시요령

- 위생감시 전 업무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함
- 공중위생감시원증(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업소 등에 출입·검사 목적을 설명함
-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예의 바르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함
- 확인서를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징구함
* 해당 영업자 서명 날인
- 단속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급자 또는 감독관에게 알려 신속히 대처함
- 감시원은 점검표와 위반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사본을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단, 현장에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마. 위반유형별 확인서 징구 방법



시설기준 위반(예시)

상기 업소는 ○○년○월○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이용업 영업신고를 필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년○월○일 ○:○○분경 공중위생업소 점검시 이용업소에서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도면 내용과 같이 업소내에 약○○㎡의 별실(밀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업소 시설 설치 도면(필요시 사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재조치 : 영업정지 1월



면허증 대여 위반(예시)

상기 업소는 ○○년○월○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명으로 미용업의 신고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년○월○일 ○○:○○분경 공중위생업소 점검시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업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 경영인 ○○○는 미용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미용사○○○는 실 경영인 ○○○에게 고용되어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면허대여 기간 :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8조

☞ 제재조치 : 미용사 면허정지 3월

※ 실 경영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위반(예시)

상기 업소는 ○○년○월○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미용업의 신고를 필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월○일 ○○:○○분경 공중위생업소 점검 시 미용업자는 업소 내·외부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제재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개선명령

※ 법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경고조치



영업정지중 영업행위(예시)

상기 업소는 ○○년○월○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정지기간 : ○○년○월○일~○○년○월○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동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월○일 ○○:○○분경 상기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영업장 2층 ○○호실에 손님 ○○외 ○○명이 투숙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영업장 도면 및 영업행위 장소의 위치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제재조치 :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바. 공중위생 위반사항 등록

- 서울행정시스템에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의 각 영업종류별 위반사항 분류 항목 메뉴에 입력

〈서울행정시스템상 위반사항 분류표〉

업 종	위반사항 분류									
	시설설비 위반	신고 사항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명령 불이행	위생 교육 미수	면허 규정 위반	풍속법 위반	청소년법 위반	의료법 위반	기타
숙박업	-	1-가, 나, 다	1-라	1-마, 바, 사	1-아	-	2-가, 나, 다	2-라	2-마	-
목욕장업	1-가	1-나, 다, 라	1-마, 바	1-사, 아, 자	1-차	-	2-가, 나, 다	-	2-라	-
이용업	2-가	2-나, 다, 라	2-마, 바	2-아, 자, 차	2-카	1-가~바	3-가, 나, 다	-	3-라	2-사
미용업	2-가	2-나, 다, 라	2-마, 사	2-자, 차, 카	2-타	1-가~바	3-가, 나, 다	-	3-라	2-바, 아
세탁업	1	2,3,4	6	7,8,9	10	-	-	-	-	5
위생관리 용역업	1	2,3,4	5	6,7,8	9	-	-	-	-	-
위생처리업	가	나, 다, 라	마	사	바	-	-	-	-	-
세척제 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카	차	-	-	-	-	-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카	차	-	-	-	-	-



2 행정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나. 행정처분 유형

- 이·미용사 면허취소·정지,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다.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 등을 실시 후 진행

라. 행정처분 결과 등록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확정 후 즉시 입력
 -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징금부과
- 위반사항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내역도 입력

➤ 이·미용사 면허 관련 위반사항 적발기관과 면허최초 교부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미용사 면허와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시·군·구는 면허최초 교부기관에 이를 통보(적발된 위반사항이 해당 면허자의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를 통보내용에 포함하여 처분기간설정 등 업무에 참고토록 함)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절차 진행

3 과징금 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 과징금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같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제재금



나. 과징금 산출 방법

- 연간 매출액은 관련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금년도 매출액 자료 또는 업소 매출액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과징금 결정
-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으로 재처분이 불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 등 조치)에 의하여 이를 징수

* 2016년 하반기부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영업정지 재처분 가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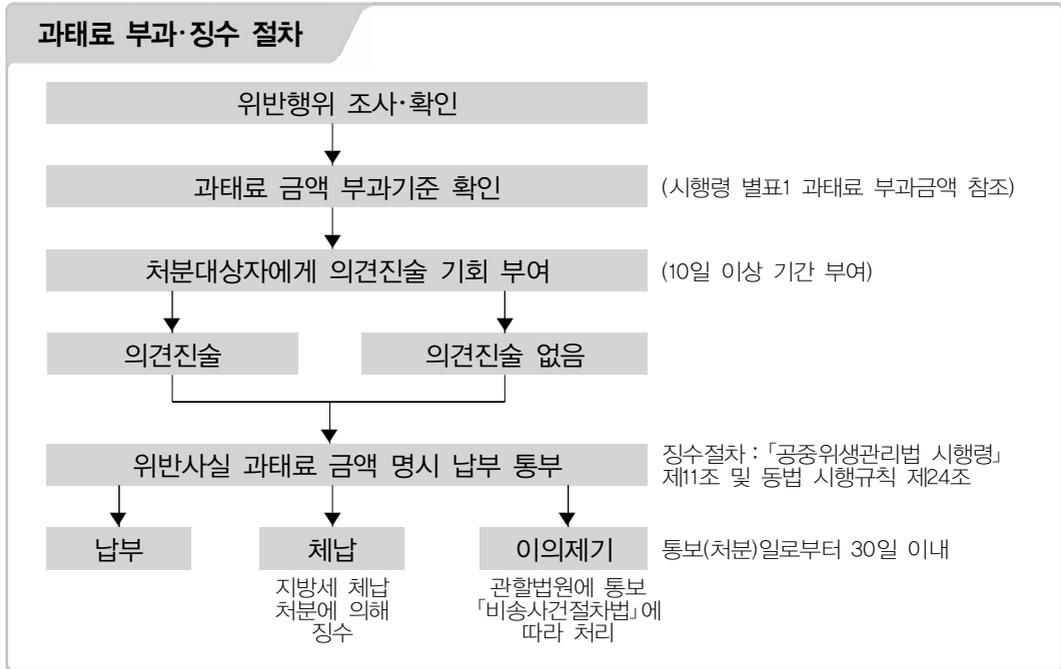
과태료 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 위반행위(행정질서법)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 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함께 작성
-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 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다. 과태료 처분 불복

-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
 - ☞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통보
 - ☞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 과태료 재판(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증거서류(원본 또는 등본)
- 재판의 방식 : 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5

벌칙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지권에 의거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해 조치

나.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영업(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업한 자(법 제11조 제1항)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제1항 후단규정)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의2)
 - 건전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4조 제7항)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 관련 서식 : [서식 제5호] 진술서, [서식 제6호] 고발장



6 봉인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서식 제7호] 게시문

나. 내용

- 영업소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영업소를 폐쇄
- 영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구 및 시설물을 봉하고 그 자리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관인을 찍어 보전케 함으로써 기구 및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봉인의 효력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상, 은닉,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수 없음
-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에 의하여 처벌함

라. 봉인실시의 범위

- 봉인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불법영업자가 스스로 폐쇄할 것이 확실할 때는 봉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봉인의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단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봉인을 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봉인 조치할 것임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급격한 사유가 있어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구두로 통지함과 동시에 봉인을 집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집행공무원은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참여 하에 봉인을 실시하되 참여인으로부터 봉인물품 보관증을 제출받아야 함

☞ [서식 제8호] 봉인물품 보관증



- 봉인용지는 관할 시·군·구의 관인을 사전날인 받아 사용하되 사용할 시에는 봉인 집행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여 날인한 후 사용
- 봉인용지 수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수불대장에 의하여 수불하여야 하고 관인 사전날인 대장의 날인 매수와 일치하여야 함
 - ☞ [서식 제9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 봉인집행 물품은 봉인 물품대장에 등재 후 사후 관리하되 봉인용지 사용매수 및 번호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 ☞ [서식 제10호] 봉인 물품대장
- 봉인은 그 사유가 해제된 후에도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임의로 제거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할 시는 소정절차에 의한 결재를 받아 이해관계인에게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음

바. 봉인의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음.

사. 봉인집행 방해 또는 집행 효용한 자에 대한 조치

- 봉인집행을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고발
- 봉인지를 제거, 손상하거나 봉인물품을 은닉, 기타의 방법 등으로 봉인의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위반으로 고발조치



I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운영 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나. 위·해촉자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가능(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다. 임기 : 2년

☞ 소속 단체장 등 요청으로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가능

라.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2

위촉 및 해촉

가. 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위촉

위촉권자는 자격이 있는 자를 명예위생공중감시원으로 위촉하되 현재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족포함)를 위촉해서는 안됨

- 명예감시원 활동 희망자는 활동신청서를 작성 후 소속단체에 제출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활동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함
 - 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는 활동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함
 - ☞ [서식 제11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
 - ☞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등재 후 명예감시원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발급함
 - ☞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 ☞ [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 ☞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다. 해촉

- 명예감시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함

- ① 추천받은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③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함
- ④ 공중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 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명예감시원의 추천기관과 소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운영 및 관리

가. 명예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는 활동지역을 지정하여 시·군·구별로 명예감시원을 배정할 수 있고,
 - 필요한 경우 활동지역과 시·군·구별 배정 인원을 변경 조정할 수 있음
- 명예감시원을 배정받은 시·군·구에서는 명예감시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중위생 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명예감시원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중위생 관련 제반 정보 사항을 명예감시원에게 제공하고,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업무 관련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함

나. 교육훈련

-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무 위주의 정기교육을 실시
- 신규 위촉자는 위촉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기 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은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로 실시하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지자체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 이론,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으로 함
-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은 매 활동 시마다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함



다. 활동 원칙

-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위촉권자가 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여야 함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 시에는 그 증거 자료(사진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함
- 명예감시원은 활동기간중에는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라. 활동비 지원

-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은 1인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함
 - ☞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활동비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활동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위촉 인원수 및 연간 활동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활동사례비(수당)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다만, 시·도지사의 “명예감시원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활동일수 및 수당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명예감시원은 지역 내에서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시·도 및 추천기관에 알려야 함
- 활동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이 중복 위촉되지 아니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예감시원 위촉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명예감시원의 합동단속, 지도·계몽 등에 필요한 활동 일수는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여 운용하여야 함



III 위생교육



1 운영 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나.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9호, 구강생활건강과-2766('14.7.1.)호, -4070('15.7.6.)호, -547('16.2.1.)호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교육대상	교육기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영업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목욕업 영업자	(사)한국목욕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업 영업자	(사)한국이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가목 또는 마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일반), 미용업(종합) 영업자	(사)대한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의 다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자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 나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피부) 영업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2호 라목 규정에 의한 미용업(화장·분장) 영업자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세탁업 영업자	(사)한국세탁업중앙회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다. 교육시간 : 매년 3시간



라. 위생교육 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 가능(단, 이용업·미용업 제외)

●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

※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기 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마. 지자체 간 교육수료 인정

- 공중위생영업자가 타 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바. 미용업종별 위생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2 위생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 당시 기준으로 관할 구역의 공중위생영업자(영업신고자 및 지위승계수리에 따른 영업자), 즉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 강의 등과 관련하여 실시단체장에게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하고, 교육시간 내에 물품판매 등 교육취지를 저해하는 행위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IV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1 실태보고 개요

가. 통계명 :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743호)

☞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나. 작성 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조사내용

-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이용시설’이 삭제(‘16.12.23.시행)되어 2017.1.1. 이후 통계 생성시 ‘공중이용시설 현황’ 삭제

☞ [서식 제16호]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서식

라.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마. 보고주기

- 시·군·구 ⇨ 시·도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시·도 ⇨ 보건복지부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건복지부 : 익년도 1분기 중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공표



바. 보고방법 :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면(공문) 보고 불필요

- (시·군·구) 분기별로 각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후 보고기간 내 보고
 -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도에 보고됨
- (시·도) 관할 시·군·구 자료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보고기간 내 보고
 -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됨
- (보건복지부) 시·도 행정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보고 내용 확인
 - ☞ 서울행정정보시스템내 서울광장에 시스템 매뉴얼 참조
 - 시스템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76-5800

사. 실태보고 통계 산출 기준

- 업소수 : 보고시점 기준 신고된 업소의 수
- 지도·점검 건수 : 보고시점 기준 신고 및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
- 위반 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
 - 보고기간 내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내역 분류 기준으로 산정
 - ☞ 면허 행정처분건수는 위반사항 적발 시·군·구에서 산정함

예시 01

2007.1.31 숙박업 지도점검결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위반행위로 2007.2.10 ‘경고’로 행정처분 한 경우 위반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

- 2007.1.31 현재 : 위반행위는 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반 건수 0, 행정처분건수 0

구 분	지도감시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신고사항위반	경고
숙박업	1	0	0

- 2007.2.10 현재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위반건수 1, 행정처분건수 1

구 분	지도감시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신고사항위반	경고
숙박업	1	1	1

 예시 02

창원시에서 받은 면허로 영업중인 서울종로에 있는 이용업소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알선’한 위반행위로 ‘영업소는 영업정지, 면허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됨.

• 서울종로의 경우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이용업	2	1	1

• 창원시의 경우

구 분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이용업	0	0	0

제 5 편

舊.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 공중위생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검색어 입력 왼쪽 법령/자치법규 역화살표 클릭

→ ‘연혁법령’ 변경 후 “공중위생법” 검색어 입력

- 공중위생법 → 85번부터 참조

- 공중위생법 시행령 → 97번부터 참조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 113번부터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7년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2014-201호, (2014.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4.제조기준, 별표가, 원료명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등 삭제 예정 ('17년 상반기 추진 예정) ● 별표5. 기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2.위생종이, 2)물종이류 (1)규격 ④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에 한함(첨가시 성분명 표기)으로 고시개정 발령('17.8.16 시행)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으로 舊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용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예정('18년)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내용

	구. 공중위생법('99.2)	위생용품 관리법(안)																				
1 관리 주체	✓ 총괄관리 : 복지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td style="width: 25%;">법령소관</td><td>복지부</td></tr> <tr><td>영업신고</td><td>지자체</td></tr> <tr><td>수입신고</td><td>지방식약청 (서울, 부산, 경인) 검역소(서울, 부산, 인천 제외)</td></tr> <tr><td>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td><td>복지부</td></tr> <tr><td>영업자 지도·감독</td><td>복지부, 지자체</td></tr> </table>	법령소관	복지부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 (서울, 부산, 경인) 검역소(서울, 부산, 인천 제외)	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	복지부	영업자 지도·감독	복지부, 지자체	✓ 총괄관리 : 식약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td style="width: 25%;">법령소관</td><td>식약처</td></tr> <tr><td>영업신고</td><td>지자체</td></tr> <tr><td>수입신고</td><td>지방식약청</td></tr> <tr><td>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td><td>식약처</td></tr> <tr><td>영업자 지도·감독</td><td>식약처, 지자체</td></tr> </table>	법령소관	식약처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	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	식약처	영업자 지도·감독	식약처, 지자체
법령소관	복지부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 (서울, 부산, 경인) 검역소(서울, 부산, 인천 제외)																					
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	복지부																					
영업자 지도·감독	복지부, 지자체																					
법령소관	식약처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																					
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리	식약처																					
영업자 지도·감독	식약처, 지자체																					



	구. 공중위생법('99.2)	위생용품 관리법(안)
② 위생용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한정 • 세척제 • 행굼보조제(고시에서 정의) •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 · 손가락 · 젓가락/위생종이(냅킨,물종이류)/이쑤시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세척제, 행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 · 손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③ 영업종류 및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시설기준 • 환경변화 등 반영이 안되어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장비 설치 의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일회용 물컵 제조업 설비기준의 인쇄기, 왁스 코팅기 설치 의무</p> <p>☞ 이는 종이에 직접 코팅인쇄 하던 과거에 적합</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안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구법의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을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현실화(안 제3조) •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 현실화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④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접수(일부식약청, 검역소) • 일부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국립검역소에 방문 · 접수 • 수입신고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접수 가능(지방식약청)(안 제7조) • 지방식약청에 방문 및 전산접수 병행 가능(안 제7조, 총리령 위임) • 수입검사수수료 납부(안 제25조) • 재검사 요청 가능(안 제21조)
⑤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개 포장지별 표시의무 • 기타위생용품의 날개 용기 또는 포장에 모든 표시항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적정한 표시방법(안 제10조) • 기타위생용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에 표시 근거 마련 (총리령 위임)



	구. 공중위생법('99.2)	위생용품 관리법(안)
<p>⑥ 자가 품질 검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이상 검사 의무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매월 2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2년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안 제12조) • 품목별로 적정수준의 검사주기* 운영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 (유사입법례) 기구·용기·포장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
<p>⑦ 벌칙 등 형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 500만원이하 등 • 행정처분은 법 모든 명령 위반시 •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칙 부과 • 영업변경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 1000만원이하 등 • 행정처분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칙 부과(안 제27조) • 과태료 규정 구법과 동일(안 제29조)
<p>⑧ 위생 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인 선임·운영 의무 • 세척제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어 품질·위생관리 등 실시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맞춤



I 위생처리업 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2.8 제정되어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으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시까지 종전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1 정 의(공중위생법 제2조)

- 위생처리업이란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물수건)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영업으로서, 수건을 살균·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

2 영업의 신고

가. 신고권자 : 시·군·구청장

나. 수수료(규칙 제52조) :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다. 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

3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2조)

- 작업장 및 창고
 - 작업장은 청결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및 창고는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서 8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장 내수재료로 벽을 설비하여야 하며 주거와 독립 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재료로 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장 및 창고의 천정은 내수재료로 하고 창문 등에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갱의실 또는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자동세탁기(용량 30킬로그램이상의 행균·탈수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보일러시설(스팀 또는 온수보일러로서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오물탈진기 및 포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 급수시설

- 급수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고 변기 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에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위생시설

-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영업자 준수사항(법 제12조)

- 시설·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유통과정에서의 변질품 등은 반품조치하여야 한다.



- 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2호, 2013.10.23)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생처리업중 물수건위생처리업에 적용한다.

2. 정 의

물수건위생처리업이라 함은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원단의 구비요건

가. 원단의 규격

구분	무게(g/장)	길이(cm/장)	폭(cm/장)	재료 및 색깔
1호	15g±5%	24cm±5%	25cm±5%	백색의 면타올
2호	25g±5%	28cm±5%	28cm±5%	백색의 면타올

나. 외포장재는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위생처리기준

가. 회수과정

대여한 물수건은 부착된 오염물질로 인한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4일 이내에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처리 과정

- 1) 세탁물은 오염정도에 따라 아주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 하여야 한다.
- 2) 부착되어 있는 오염물은 세탁 전에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본처리 과정

1)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은 물수건의 처리방법

가) 소독효과가 있는 염소제를 사용하는 방법

- (1) 적당량의 세제를 사용하여 60℃이상의 용수중에서 10분 이상 세탁을 행하고 탈수 후 행굼을 충분히 하고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제용 염소제를 첨가 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기의 최대부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행굼은 정수 된 용수를 사용하여 4회 이상(매회 3분간 이상) 행하고 매번 탈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제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3)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2번째 행굼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이상 되도록 첨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열탕 또는 증기에 의하여 소독후 세척하는 방법



- (1) 소독은 80℃이상의 용수에 10분이상 처리하거나 100℃ 또는 그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시킨 후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세척은 적당량의 세제를 사용하여 60℃이상의 용수중에서 10분이상 세탁을 행하고 탈수 후 행굼은 정수 된 용수를 사용하여 4회 이상(매회 3분간이상) 행하고 매번 탈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제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오염정도가 심한 물수건의 처리방법

가) 반복 세척을 행하는 방법

- (1) 적당량의 세제를 사용하여 60℃이상의 용수중에서 15분이상 세탁을 행하고 탈수 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세탁을 행하고 행굼 및 염소제를 첨가하여 소독을 행하여야 한다.
- (2) 행굼 및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전기 1)-가)의 (2) (3)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나) 가성소다에 의해 전처리를 행하는 방법

- (1)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물수건은 식품첨가물용 가성소다를 적당량 첨가하여 60℃이상의 용수중에서 15분 이상 침지를 행하고 탈수 후 행하여야 한다.
- (2) 척은 전기 1)-가)의 (1) (2) (3)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때 가성소다가 물수건에 잔류하지 않도록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효소제에 의한 전처리를 행하는 방법

- (1) 전처리는 적당량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제를 첨가한 60℃이상의 용수중에서 40분간 침지를 행하고 탈수후 세척을 행하여야 한다.
- (2) 세척은 전기1)-가)의 (1)(2)(3)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1) 또는 2)의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당량의 염소제 등 표백제를 분처리 또는 전처리시에 첨가할 수 있다.

라. 탈수과정

분처리를 마친 물수건은 원심력 탈수기에 넣어 충분히 탈수하여야 한다.

마. 접는과정

물수건을 포장하기전 접는 과정은 자동기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포장

물수건의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포장제로 포장하여야 하고, 포장후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봉합 하여야 한다.

사. 공급 및 보관

포장된 물수건 제품은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 이하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아. 기계·기구 등의 청결유지

물수건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제품을 운반하는 용기 등은 염소제 또는 계면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 및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수성이 있고 세정하기 쉬우며 부식성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5. 작업장의 위생관리

- 가.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방충, 방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채광, 조명, 환기가 충분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업원의 위생관리

- 가.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깨끗한 위생복으로 갈아 입고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만약 결핵 등 전염성 질병과 피부질환에 걸려 있을 때에는 완치될 때까지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다. 사업주는 종업원 중 위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생관리인을 선임하고 작업관리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제품검사 관리

- 가. 제품에 대한 규격기준 등의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 또는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검사인력 및 장비가 있는 곳에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나. 외관·이물·이취·대장균·세균수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검사는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위생처리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신고 한 해당 연도에 한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다.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 중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영업신고 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8.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 가. 규격
 - 1) 외관: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된다.
 - 2) 이물: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 3) 이취: 소독제 이외의 이취가 있어서는 안된다.
 - 4) 대장균: 음성이어야 한다.
 - 5) 세균수: 1호 100,000이하/장, 2호 150,000이하/장
 - 6) 중금속

중금속 함유량	납(Pb)	20mg/kg 미만
	수은(Hg)	20mg/kg 미만
	비소(As)	20mg/kg 미만
	카드뮴(Cd)	20mg/kg 미만
	6가 크롬(Cr)	20mg/kg 미만

- 나. 시험방법: 별표 1. 물수건의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9. 표시기준

가. 제품단위 및 포장단위별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조업소명
- 2) 소재지
- 3) 영업신고 번호

10. 사용기준의 주지 의무

위생처리업자는 다음 사용기준을 사용처에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 가. 대여 받은 제품은 4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고객의 손이나 얼굴을 닦기 위하여 대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식탁의 행주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미사용의 제품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가습 및 60℃이상으로 보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사용한 제품은 뚜껑이 있는 용기 등에 넣어 회수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별표 1. 물수건의 검사방법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

가. 채취방법

검체의 채취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하여야 하며, 멸균한 용기에 넣어 원칙적으로 저온(5±3℃)으로 유지시키면서(검체 채취 후 4시간이내) 검사기관에 운반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시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득이 저온으로 검체를 유지할 수 없거나 즉시 운반이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취일시 및 당시의 검체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취 급

채취된 검체의 냉장운반을 위하여 얼음을 사용할 때에는 이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가. 외관 : 검체를 흑색판위에 완전히 펴서 육안으로 양면을 관찰하여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나. 이물 : 검체를 흑색판위에 완전히 펴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물이 부착되었는지를 조사한다.

다. 이취 : 검체를 500ml 비이커에 넣고 시계접시로 덮은 다음 40~50℃의 수욕중에서 5분간 가온하고 심하게 흔들어 준 후 시계접시를 열고 냄새를 맡을 때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염소냄새는 제외한다).

라. 대장균

(1)시험방법

- 한도시험

멸균비이커에 검체무게의 10배액이 되게 멸균인산완충희석액 또는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고 덮개를 하여 무균실험대안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멸균피펫으로 혼합하여 이것을 시험원액으로 한다. 시험원액 1ml씩을 3분의 EC발효관에 접종하고 44.5±0.2℃로 24±2시간 배양한다. 이때에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백급이를 EMB평판배지에 희선접종하여 35±1℃로 24±2시간 배양한 후 정형적인 집락(정형적 집락이 없을 때에는 정형적인 집락에 유사한 집락 2개이상)을 취하여 유당부이온발효관 및 보통한천사면배지에 각각 이식한다(정형적 집락과 유사한 집락을 취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배지에 각각 이식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 접종한 것은 35±1℃로 48±3시간 배양하고 보통한천사면배지에 접종한 것은 35±1℃로 24±2시간 배양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서 가스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고 검경후 그람음성 무아포성간균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2)배지

(가)EC 배지(EC Broth)

Peptone	20.0g
Lactose	5.0g
Bile salt mixture	1.5g
Dipotassium phosphate	4.0g
Monopotassium phosphate	1.5g
Sodium chloride	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어 가열 용해시킨후 pH 6.9~7.1이 되도록 한 다음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나)EMB 배지

Peptone	10.0g
Lactose	5.0g
Sucrose	5.0g
Dipotassium phosphate	2.0g
Eosin Y	0.4g
Methylene Blue	0.065g
Agar	13.5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 7.2가 되도록 맞추고 15파운드(120℃)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다)유당부이온 배지(Lactose Broth)

Peptone	5.0g
Beef Extract	3.0g
Lactose	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 6.9가 되도록 맞추고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마. 일반세균수

표준평판법

표준평판균수는 검체중에 존재하는 세균중 표준한천배지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증온균의



수를 말한다. 특히 이 방법은 검체와 표준한천배지를 페트리접시 중에서 혼합 응고시켜 배양후 발생한 세균의 집락수로부터 검체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1) 시험방법

멸균비이커에 검체무게의 10배액이 되게 멸균인산완충희석액 또는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고 덮개를 하여 무균실험대안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멸균 피펫으로 혼합하여 이것을 시험원액으로 한다. 다음 각 희석액 1ml씩 멸균페트리접시 2매이상씩에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검체와 배지를 잘 섞고 냉각응고시킨다. 특히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ml를 가하여 증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은 20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냉각응고시킨 페트리접시는 거꾸로 하여 35±1℃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이때 대조시험으로 검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 1ml를 배지에 가한 것을 대조로하여 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 및 조작이 무균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배양후 즉시 집락계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한다.

(2) 세균수의 기재보고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ml중의 세균수를 기재 또는 보고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제한된 것에서 발육한 집락을 측정할 수치인 것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1평판에 있어서의 집락수는 상당희석배수로 곱하여 그 수치가 표분평판법에 있어서 1ml중의 세균수 몇 개라고 기재, 보고하며 동시에 배양온도를 기록한다. 이 산출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표준”이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기록하는 숫자는 높은단위로부터 3단계를 4사5입하여 유효숫자를 2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한다.

(3) 배 지

(표준한천배지) : Standard Methods Agar
(Plate Count Agar)

Tryptone	5.0g
Yeast Extract	2.5g
Dextrose	1.0g
Agar	13.5g

위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가열용해시킨 후 pH 7.0으로 맞추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바. 중금속

중금속 중 납(Pb),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의 함유량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KS K 0852에 따르고, 6가 크롬(Cr⁶⁺)의 함유량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KS M ISO 17075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 등에서는 중금속 측정기기로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 강도측정기 또는 수은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과태료 처분

-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5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0만원
- 시설 및 설비의 개수·개선명령에 위반한 영업자등 : 60만원

6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제41조, 별표 7)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구조·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때	개수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10조(영업의 계속 등)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및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12조(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II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

1 정 의(공중위생법 제2조)

가. 세척제 제조업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 기구 등을 세척하는 다음의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

구분(종)	정의
1종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3종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일회용의 물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게 및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영업

2 영업의 신고

가. 신고권자 : 시·군·구청장

나. 수수료(규칙 제52조) : 자치구조례가 정하는 금액



다. 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 제조방법설명서(제조영업에 한함) 1부
- 위생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세척제 제조업에 한함) 1부

라. 영업신고 제한

-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 변경신고

가. 신고권자 : 시·군·구청장

나. 수수료(규칙 제52조) :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다. 변경신고 대상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증을 고쳐쓰거나 재교부



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가. 지위승계 사유

-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세척제제조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신고기관 및 기간 : 1월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

다. 신고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첨부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1월이상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세척제 제조업

● 작업장

-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 및 내벽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구 등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와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배합시설, 포장시설, 작업대(내수성)

● 급수시설

급수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 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나. 기타위생용품 제조업(1회용의 물컵 제조업)

● 작업장

-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 되어야 한다.
-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 및 내벽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구 등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와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 코팅기, 사출기, 선별 및 포장작업대

● 급수시설

급수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 기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화장실

세척제 제조업의 다. 화장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위생용품 제조업(1회용의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 작업장

-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1회용 젓가락제조업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다음의 기계기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제조업(목재에 한함)	위생종이 제조업
절단톱, 찜통, 깎기, 절삭기, 먼치기, 건조기, 포장기	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 급수시설

- 급수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검사기관에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화장실

- 1. 세척제제조업의 다.화장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7

위생용품제조업자 준수사항

가. 규격 및 기준 준수

-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함

※ 수출시에는 수입자의 요구에 의한 규격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참고



나.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 보관

- 당해 제품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

다. 품질관리

- 제조업소의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것
-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제품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할 것
-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라. 표시기준

-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한다.

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

-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중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 제조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또는 표시
 -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7-27호(2017.2.15)]

제1조(통칙) 이 규격 및 기준을 제품별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별표 1 통칙에 준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1(행굼보조제의 규격 및 기준) 행굼보조제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기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기타 위생용품의 종류별 규격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87. 6.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고시의 폐지) 보건사회부고시 87-11호(87. 3. 16)식품중양의규격 및기준중 다음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1. 제5.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라항 종이 또는 가공지제 기구·포장의 시험 방법중 내프킨에 관한 사항
2. 제8. 세정제의 규격 및 기준

부 칙 (1988. 5. 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5. 30)

이 고시는 '91. 1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도 공중위생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992. 9.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염소 및 수산화나트륨(액체)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 9.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5)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19)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검정받은 세척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자가품질규격및기준에 의하여 검정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0. 28)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5)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타위생용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9.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9)

이 고시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15)

이 고시는 발령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칙

이 규격 및 기준은 제품별 각항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하의 통칙에 준한다.

- (1)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다음의 약호를 쓴다.
 - 길이 : m, cm, mm, nm
 - 용량 : L, mL, μ L
 - 중량 : kg, g, mg, μ g
 - 넓이 : cm^2
 - 1 L는 1,000 cc, 1 mL는 1 cc로 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 열량 : cal, Kcal
- (2)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쓴다. 다만, 용액 100 mL중의 물질함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 용액 100 mL중의 물질 함량(mL)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쓴다.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ppm의 약호를 쓴다.
- (3) 온도는 셀시우스법을 쓰며, 아라비아숫자의 오른편 위에 $^{\circ}C$ 를 붙여서 표시한다.
- (4) 표준온도는 $20^{\circ}C$ 로 하고, 상온은 $15\sim 20^{\circ}C$, 실온은 $1\sim 35^{\circ}C$, 미온은 $30\sim 40^{\circ}C$ 로 한다. 온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60\sim 70^{\circ}C$, 열탕은 $100^{\circ}C$ 의 물로 한다. “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 함은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는 약 100℃로 하되, 수욕대신 약 100℃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 (5) “찬곳”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장소를 말한다.
- (6)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 (7)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특히 그 용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액을 말한다
- (8)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mmHg 이하로 한다.
- (9)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미산성 : 약 5~약 6.5
 약산성 : 약 3~약 5
 강산성 : 약 3 이하
 미알칼리성 : 약 7.5~약 9
 약알칼리성 : 약 9~약 11
 강알칼리성 : 약 11 이상
- (10) 용액의 농도를 “(1→5)”, “(1→10)”, “(1→100)” 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1 g 또는 액체시약 1 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각각 5 mL, 10 mL, 100 mL 등으로 하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 “(1+1)”, “(1+5)” 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1 g 또는 액체시약 1 mL에 용매를 각각 1 mL, 5 mL 혼합하는 것으로서 뒤의 숫자로서 용매의 비율을 나타낸다. 용매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써서 혼합한다.
- (11) “(1 : 1)”, “(4 : 2 : 1)” 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시약의 혼합용량비 또는 고체시약의 혼합중량비를 말한다.
- (12) 방울수를 측정할 때에는 20℃에서 증류수 1 g을 20±1방울로 적하하는 기구를 쓴다.
- (13) 네슬러관은 안지름 20 mm, 바깥지름 24 mm, 밑에서부터 마개의 밑까지의 거리 20 cm의 무색유리로 만든 공전평저시험관으로서 50 mL의 것을 쓴다. 또한 각관의 눈금의 높이의 차는 2 mm이하로 한다.
- (14) 원자량은 국제원자량표에 의한다.
 분자량은 이 표에 의하여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정리한다.
- (15)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이라고 기재한 것은 시험에서 얻은 수치를 끊어 올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였을 때의 수치를 따라 표시한 것이다.
- (16)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화학칭칭 또는 자동미량칭칭으로 칭량함을 말한다.
- (17)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행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준온도에서 행한다.
- (18) 수치를 정리하여 소숫점 이하를 n자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n+1)자리 이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또는 버린다.
- (ㄱ) (n+1)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에는 끊어 올린다.
 (ㄴ) (n+1)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에는 버린다.
 (ㄷ) (n+1) 자리의 수가 5일 때에는 n자리의 수가 1, 3, 5, 7 또는 9일 경우에는 끊어 올리고, n자리의 수가 0, 2, 4, 6 또는 8일 경우에는 버린다.
- (19) “타르색소”라 함은 타르색소의 알루미늄레이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20) 이 규격 및 기준에 규정된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험방법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 간편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 **별표 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1. 정의

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2)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 규격

항목 \ 구분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pH(사용농도)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는 제외)	-
메틸알콜 (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이하	1mg/g이하	-
비소 (사용농도)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 (사용농도)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다만, 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한다.

3. 시험방법

- 1) pH
이 품목에 물을 가하여 사용농도로 희석한 액을 25℃에서 유리전극법(pH미터)으로 측정한다.
- 2) 메틸알콜
 - (1)장치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2)표준용액의 조제
 - ① 메틸알콜표준용액 : 메틸알콜 100 mg을 정밀히 달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내부표준용액 5 mL 및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메틸알콜표준용액으로 한다.
메틸알콜표준용액 1 mL = 1.0 mg CH₃OH
 - ② 이소프로필알콜내부표준용액 : 이소프로필알콜 1,600 mg을 취해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3)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 10 g에 물 20 mL 및 실리콘수지 1~2방울을 가하여 조용히 증류하여 유액 9 mL를 받는다. (이 때 혼탁이 있으면 석유벤젠 5 mL를 가하여 1~2회 잘 흔들어 섞은 후 석유벤젠 층을 버려 유분을 제거한다) 유액에 내부표준용액 0.5 mL를 가해주고 물을 가하여 1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4) 시험조작

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 칼럼 : 안지름 0.2 mm, 길이 50 m의 모세관에 폴리에틸렌글리콜이 0.3 μ m의 두께로 코팅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분리성능을 가진 것
- 칼럼 온도 : 60 $^{\circ}$ C ~ 150 $^{\circ}$ C
- 주입부 온도 : 200 $^{\circ}$ C
- 주입방식 : 스플릿 (10 : 1)
-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 검출기 온도 : 250 $^{\circ}$ C
- 운반기체 : 질소 또는 헬륨 (유속 : 분당 1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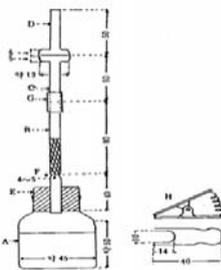
② 시험조작

시험용액 및 메틸알콜표준용액 1 μ L씩을 사용하여 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메틸알콜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의 메틸알콜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각 크로마토그램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에 대한 메틸알콜 피크면적 비를 구하여 시험용액 중 메틸알콜의 농도를 구한다.

3) 비소

(1) 장치

다음 그림과 같다. (단위 : mm)



A : 발생병, 용량 약 60 mL로서 40 mL에 표선이 있다.

B : 안지름 약 6.5 mm의 유리관

C 및 D : 접속부가 안지름 6.5 mm, 바깥지름 약 18 mm로서 같이 맞춘 유리관으로 접속부의 내연과 외연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것

E : 고무마개

F : 유리관 B의 협소부, 유리솜을 그 위치까지 넣는다.

G : 고무관

H : 집게

유리관 B에는 유리솜을 F로부터 약 30 mm 높이까지 채우고 초산납시액 및 물을 같은 양의 혼액으로 고르게 적시고 관의 하단으로부터 조용히 흡인하여 유리솜 및 기벽에서 과잉의 액을 제거한다. 사용직전 유리관 C 및 D의 접속부에 브롬제2수은지를 끼우고, 집게 H로 양관을 고정한다.

(2) 시약 및 시액

- ① 요오드칼륨시액 : 요오드칼륨(KI) 16.5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하여 갈색병에 보존한다.
- ② 산성염화제1주석시액 : 염화제1주석($\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4 g을 염산 125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250 mL로 하여 밀봉하여 보존한다. 조제 후 1개월 내에 사용한다.
- ③ 브롬제2수은지 : 크로마토그래피용 여과지를 폭 약 3 cm, 길이 약 10 cm로 잘라서 이를



브롬제2수은(HgBr₂) 5 g을 에탄올 100 mL에 녹인 액에 담그어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1시간 이상 어두운 곳에 방치한 다음 꺼내어 어두운 곳에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자연건조 시키고 지름 약 18 mm의 원형으로 잘라서 갈색병에 보존한다. 정색하는 부분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 ④ 사상아연 : 아연(무비소, 약 1,000~1,410 μm)을 쓴다.
- ⑤ 초산납시액 : 초산납 11.8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하고 초산 2방울을 가하여 밀봉하여 보존한다.

(3)표준용액의 조제

비소표준용액 : 아비산(As₂O₃)을 미세한 분말로 하여 테시케이타(황산)에서 건조한 다음 0.10 g을 정확하게 달아 20%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에 녹인다. 이 액을 희석한 황산(1→20)으로 중화하고 다시 희석한 황산(1→20) 10 mL를 추가한 다음,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00 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표준원액 10 mL에 희석한 황산(1→20) 10 mL를 넣고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넣어 1,00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이 액은 쓸 때 만들어 밀봉하여 보존한다.

비소표준용액 1 mL = 1.0 ug As₂O₃

(4)시험용액의 조제

검체소량을 가열하여 탄화할 때는 1법에 의하고, 탄화하지 아니할 때는 2법에 따른다.

① 1법

이 품목에 물을 가하여 사용농도로 희석한 액 100 mL를 취하여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10 m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 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액의 색이 암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 2~3 mL씩을 추가하면서 액이 무색~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50 mL 및 포화수산암모늄시액 10 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10 mL를 가하여 식히면서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고, 이를 100 mL이하로 증발 농축한 다음 물을 가하여 정확히 10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② 2법

이 품목에 물을 가하여 사용농도로 희석한 액 100 mL에 질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다음 다시 질산 10 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 20 mL를 가하여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물 20 mL로 씻어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고 이를 100 mL 이하로 증발 농축한 다음 물을 가하여 정확히 100 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5)시험조작

1종 및 2종 세척제의 경우는 발생병에 시험용액 20 mL를, 3종 세척제의 경우는 시험용액 2.5 mL를 취하여 발생병에 넣고, 이에 희석한 염산(1→2) 5 mL 및 요오드칼륨시액 5 mL를 가하여 2~3분간 방치한 다음 산성염화제1주석시액 5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다. 이어 물을 가하여 40 mL로 하고 사상아연 2g을 가하여 즉시 유리관 B, C 및 D를 꽂은 고무마개 E를 막고 25℃의 수욕조에 발생병의 약 4분의 3까지 넣어 1시간 방치한다.

(6)표준색의 제법

발생병에 비소표준용액 1 mL를 넣고 위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7)비소한도

(5) 및 (6)의 조작을 될 수 있는 대로 동시에 하고 장치는 적어도 2개씩을 사용하여 시험하되 조작한 다음 즉시 브롬제2수은지를 꺼내어 직사광선을 피하여 곧 비색한다. 이 때 (5)에서 얻은 색이 (6)에서 얻은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작에 의하여 얻은 정색의 정도가 다를 때에는 조작을 다시한다.

(8)조작상의 주의

- ① 이 시험 및 시험용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시약은 공시험에서 정색되지 아니하거나 거의 정색되지 아니하는 것을 써야 한다.
- ② 발생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브롬제2수은지를 끼워 맞춘 부분의 연결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 ③ 브롬제2수은지의 정색은 빛, 열, 습기 등에 의하여 퇴색하므로 비색은 즉시 하여야 하며, 데시케이터에 차광하여 두면 잠시 보존할 수 있다.

4) 중금속

(1)시약 및 시액

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을 물 10 mL 및 글리세린 30 mL의 혼액에 녹인다.

(2)표준용액의 조제

납표준용액 : 질산납(II)(Pb(NO₃)₂)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 취해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용액으로 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3)시험용액의 조제

3)비소 (4)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4)시험조작

1종 및 2종 세척제의 경우는 시험용액 20 mL를, 3종 세척제의 경우는 시험용액 10 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이에 희석한 초산(6→100) 2 mL 및 물을 가하여 50 mL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2 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이에 희석한 초산(6→100) 2 mL 및 물을 가하여 50 mL로 하여 비교표준용액으로 한다. 양 액에 황화나트륨시액 2방울씩을 가하여 잘 섞어 5분간 방치한 다음 양 관을 백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와 옆에서 보아 액의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이 비교표준용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광증백제

(1)장치

자외선 램프

(2)시약 및 시액

- ① 0.1% 암모니아수
- ② 10% 염산 : 염산 23.6 mL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3)예비시험

어두운 곳에서 이 품목에 365 nm를 주파장으로 하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색~청백색 형광의 유무를 관찰한다. 형광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한다.

(4)본시험

①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에 물을 가하여 사용농도로 희석한 액 100 mL를 취한 다음 0.1% 암모니아수 몇 방울을 가해주고 잘 저어 준 다음 미알칼리성(pH 7.5~9)으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② 시험조작

시험용액에 10% 염산 1~2 방울을 가하여 약산성(pH 3~3.5)으로 한 다음 이에 미리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형광이 없는 거즈(2×4 cm)를 넣고 약 30분간 수욕 상에서 가운다. 거즈를 꺼내 물로 씻고 짠 다음 암실에서 자외선을 거즈에 약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조사할 때, 거즈전체가 청백색의 형광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4. 제조기준

- 1)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1종,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가” 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3)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도가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 4) 제조기준 및 “별표 가”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별표 가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1,3-이아미노메틸시클로헥산	1,3-bis(aminomethyl)cyclohexane	2, 3
1-히드록시에틸-1-벤질-2-운데실이미다졸리움 클로라이드	1-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um Chloride	3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린산	1-Hydroxy 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2, 3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디메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폴리머 (1,2-프로판디올 모노-2-프로페노에이트, 2-히드록시-1,2,3 -프로판트리카르복시레이트 포함)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1,2,3-propanetricarboxylate	2, 3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2*, 3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포스포노-부탄-1,2,4-트리카르복실산	2-phosphono butane-1,2,4-tricarboxylic acid	3
개미산	Formic acid	1, 2, 3
과붕산나트륨	Sodium perborate	2*, 3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과산화요소	Urea Peroxide	1, 2, 3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2, 3
구연산	Citric acid	1, 2, 3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1, 2, 3
구연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citrate, dihydrate	1, 2, 3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1, 2, 3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1, 2, 3
규산칼륨	Potassium silicate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3
글루코스 아미드	Glucose amide	2, 3
글루코헵토산나트륨	Sodium glucoheptonate	2, 3
글루콘산	Gluconic acid	1, 2, 3
글루콘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1, 2, 3
글리세린	Glycerin	1, 2, 3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Glycerin fatty acid ester	1, 2, 3
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Glyceryl polyoxyethylether	2, 3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	1, 2, 3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삼나트륨	Trisodium nitrilotriacetate	2*, 3
데나토늄벤조에이트	Denatoniumbenzoate	2,3
데카노인산	Decanoic acid	2, 3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1, 2, 3
디메틸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2, 3
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2, 3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2,6-di-t-butyl-4-methylphenol	1, 2, 3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2,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디에틸렌삼아민오아세트산 오나트륨염	Penta sodium salt of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2, 3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메틸렌포스포네이트	Diethylene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ate	1, 2, 3
디카르복실산	Dicarboxylic acid(C4-6)	1, 2, 3
디클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칼륨	Potassium dichloroisocyanurate	3
디클로로-s-트리아진트리온	Dichloro-s-triazinetrione	3
디클로산	Dichlosan	2, 3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ether	2, 3
라우라미도프로필아민 옥시드	Lauramidopropylamine oxide	2, 3
라우릴 미리스틴모노에탄올아미드	Lauryl myristin monoethanolamide	2, 3
라우릴 에테르 에톡시 설페이트 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ethoxy sulfate	1, 2, 3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1, 2, 3
라우릴 염화 피코릴레움	Lauryl Picolineum Chloride	2, 3
라우릴 폴리글루코사이드	Lauryl Polyglucoside (Vegetable oil ext.)	2, 3
라우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2, 3
리그노술포산나트륨	Sodium lignosulfonate	3
말레인산	Maleic acid	1, 2, 3
말레인산아크릴산공중합체 염화물	Maleic acid, acrylic acid copolymer of sodium salt	2, 3
메타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1, 2,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메탄술폰산	Methanesulfonic acid	3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2, 3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methylcellulose	1, 2, 3
메틸옥시란 중합체 옥시란 함유 모노헥실 에테르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hexyl ether	3
메틸옥시레인, 중합체함유 옥시레인 에테르 함유(1,2-에탄딜-디니트리로) 테트라키스(프로판올)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2-ethane diyldinitrilo)tetrakis(propanol)	2, 3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ethylisothiazolinone	2, 3
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	Methylchloroisothiazolinone	2, 3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1, 2, 3
모노과황산칼륨	Potassium monopersulfate	2, 3
모노디알킬인산에스테르	Mono-(di)alkyl phosphoric acid ester	2, 3
모노에탄올아민	Monoethanol amine	2, 3
무정형 착규산염	Amorphous complex silicate	2, 3
미리스틸디메틸아민옥사이드	Myristyldimethylamine oxide	1, 2, 3
벤조트리아졸	benzotriazol	2, 3
복숭아잎 추출물	Peach leaves fluid	2, 3
부톡시에톡시 초산나트륨	Sodium butoxyethoxy acetate	3
붕산	Boric acid	1, 2, 3
브로노폴	Bronopol	2, 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1, 2, 3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 2, 3
살구추출물	Apricot HS ext.	1, 2, 3
설파민산	Sulfamic acid	2, 3
소듐테트라보레이트	Sodium tetraborate	3
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1, 2, 3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 2, 3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 3
수소첨가피마자유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2, 3
스티렌/아크릴 중합체	Styrene/Acrylates Copolymer	2, 3
스티렌/아크릴산 암모늄 공중합체	Styrene/Acrylic acid polymer, ammonium salt	2, 3
아민폴리글리콜콘덴세이트	Aminepolyglycol condensate	3
아밀라아제	Amylase	2, 3
안식향 추출물	Benzoin Extract	1, 2, 3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1, 2, 3
알로에 에센스	Aloe essence	1, 2, 3
알로에베라 젤	Aloe vera gel	1, 2, 3
알로에추출물	Aloe Ext.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알루미늄산 나트륨	Sodium aluminate	2, 3
알루미늄산실리콘	Silicone aluminate	2, 3
알카놀아민	Alkanol amine	2, 3
알카린 프로테아제	Alkaline Protease	2, 3
알칸술폰산나트륨	Sodium alkansulfonate	2, 3
알코올알콕시레이트	Alcohol alkoxylate	2, 3
알킬글루코시드	Alkyl glucoside	1, 2, 3
알킬벤젠설펜네이트	Alkylbenzene sulfonate	1, 2, 3
알킬(C12-C15)에테르 황산암모늄	Ammonium C12-15 parath sulfate	2, 3
알킬폴리글루코시드	Alkylpolyglucoside	1, 2, 3
알킬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Alkyl pol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 glycol ether	2, 3
알킬(C12-C18)폴리에틸렌글리콜(3EO-8EO)폴리프로필렌글리콜(8PO)에테르	Alkyl(C12-C18) polyethyleneglycol(3EO-8EO) polypropyleneglycol (8PO)ether	2, 3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디메틸베타인	Alkyl dimethyl betaine	2, 3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 2, 3
알킬메틸에틸벤질염화암모늄	Alkylmethyl 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벤젠설펜산	Alkylbenzene sulfonic acid	1, 2, 3
알킬에톡시나트륨	Sodium alkyl ethoxylate	2, 3
알킬폴리에틸렌 글리콜	Alkyl(C12-C18) polyethylene glycol	2, 3
알파 술폰 메틸 코코넛 나트륨	Alpha Sulfo Methyl Coconut Sodium salt (Coconut Oil Ext.)	2, 3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 3
에스테라아제	Esterase	2, 3
에탄올	Ethanol	1, 2, 3
에톡시레이트드 지방알콜	Ethoxylated Fatty Alcoh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3
에틸렌글리콜	ethyleneglyc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염산	Hydrochloric Acid	2, 3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1, 2, 3
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	Didecyl 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디아킬 디메틸 암모늄염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1, 2, 3
염화아연	Zinc chloride	2, 3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 2, 3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오이추출물	Cucumber Ext.	1, 2, 3
옥사반-A	Oxaban-A	2, 3
옥타노익산	Octanoic Acid	2, 3
옥탄설펜산 나트륨	Sodium octane sulfonate	2, 3
옥탄포스포닉산	Octanephosphonic acid	2, 3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octyl sulfate	2, 3
올레인산	Oleic acid	1, 2, 3
요소	Urea	1, 2, 3
요오드	Iodine	2, 3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1, 2, 3
은	Silver	3
이디티에이 2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 (EDTA-2Na)	1, 2, 3
이디티에이 3나트륨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trisodium salt (EDTA-3Na)	1, 2, 3
이디티에이 4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tetrasodium salt (EDTA-4Na)	1, 2, 3
이소치아졸리논	Isothiazolinone	2, 3
이소치아졸린	Isothiazoline	2, 3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2, 3
이차 알칸 술포네이트	Secondary alkane sulfonate	2, 3
인산 1-헥사데카놀	1-Hexadecanol phosphate	2, 3
인산아미노트리메틸렌	Aminotrimethylene phosphate	2, 3
인산에스테르	phosphoric acid ester	1, 2, 3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fatty acid ester	1, 2, 3
제라니올	Geraniol(3,7-dimethyl-trans-2,6-octadien-1-ol)	1, 2, 3
제사 코코 알킬아민 에톡실레이트	Quaternary coco alkylamine ethoxylate	3
제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tribasic	1, 2, 3
제이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Dibasic	1, 2, 3
제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1, 2, 3
중규산나트륨	Sodium disilicate	2, 3
지방산 탈로우	Tallow fatty acid	1, 2, 3
지방산, 이소노네인, 3,5,5-트리메틸헥사놀산	Fatty acid, Isononane, 3,5,5-Trimethylhexanoic acid	3
지방산코코넛	Coconut fatty acid	1, 2, 3
지방산폴리글리세롤에테르	Polyglycerol fatty acid ether	2, 3
질산	Nitric acid	3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 3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
초산	Acetic acid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1, 2, 3
카라멜	Caramel	1, 2, 3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carboxy methylcellulose	1, 2, 3
카르복실산 나트륨	Sodium carboxylate	2, 3
카보닐히드롤라아제	Carbonyl hydrolases	2, 3
칼슘디소듐 에틸렌 디아민테트라 아세트레이트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 acetate	2, 3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Coconut fatty acid diethanolamide	1, 2, 3
코코넛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Cocoamidopropyl betaine	1, 2, 3
코코아모카르복시 글리시네이트	Cocoamphocarboxy glycinate	3
코크아미도 프로필아민 산화물	Cocamidopropyl amine oxide	3
코크아미드 디에탄올아민	Cocamide diethanolamine	2, 3
퀴놀린 옐로우	Quinolin Yellow	2, 3
큐멘설포산 나트륨	Sodium cumene sulfonate	2, 3
큐멘설포산 지방알콜	Cumen sulfonate fatty alcohol	2, 3
클로로헥시딘 디글루콘산염	Chlorohexidine digluconate	3
키실렌설포산나트륨	Sodium xylene sulfonate	2, 3
키실렌설포산칼슘	Calcium xylene sulfonate	2, 3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1, 2, 3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1, 2, 3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1, 2, 3
테트라아세틸렌디아민	Tetraacetyethylene diamine(TAED)	2*, 3
톨루엔 술포산	toluene sulfonic acid	2, 3
톨루엔 술포산 나트륨	Sodium toluene sulfonate	2, 3
톨루엔 술포산 칼륨	Potassium toluene sulfonate	2, 3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 amine	2, 3
트리에틸렌글리콜	Triethylene glycol	2, 3
트리클로산	Triclosan	2, 3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hosphate	1,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olyphosph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	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Eth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부틸	Iso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프로필	Isoprop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핀 오일	Paraffine oil	1, 2, 3
파라핀 왁스	paraffin wax	1, 2, 3
파인오일	Pine oil	1, 2, 3
패각소성칼슘		1,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페이턴트블루 V	Patent blue V	2, 3
펜타소디움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레이트	Pentasodium diethylenetriaminepentaacetate	2, 3
펜타아민아세트코발트 질산염	Penta Amine Acetato Cobalt III Nitrate	3
포스포노폴리카르복실산	Phosphino polycarboxylic acid	2, 3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2, 3
폴리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Polydimethyl amino ethyl methacrylate	2,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나이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Poly(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2, 3
폴리소르베이트 2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1, 2, 3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oxyethylene(80) sorbitan monooleate	1, 2, 3
폴리아크릴/이타코닉 코폴리머	Polyacryl/itaconic copolymer	2, 3
폴리아크릴산	Polyacrylic acid	2, 3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2, 3
폴리알킬렌 글리콜 에테르	Polyalkylene glycol ether	2, 3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2, 3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벤질레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benzylate	2, 3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1, 2, 3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공중합물	Polyethylene polypropylene block copolymer	1, 2, 3
폴리염산염	Poly(hexamethylenebiguanidehydrochloride)	3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 올레일에테르	Polyoxyethylene ole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Polyoxyethylene alkyl ether	2, 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2, 3
표백분	Bleaching powder	3
프로테아제	Protease	2, 3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1, 2, 3
프로필렌글리콜 1-메틸에테르	Propylene glycol 1-methyl ether	2, 3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1, 2, 3
피마자유	Castor oil	1, 2, 3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hexametaphosphate	1, 2, 3
황산	sulfuric acid	2, 3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2, 3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2, 3
황삼산화물	Sulfur trioxide	2, 3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 ethylcellulose	2, 3
C12-14선형 글루코스아미드	C12-14 Linear glucose amide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C12-15-옥소알콜에톡시레이트 프로폭시레이트	C12-15-Oxoalcohol ethoxylate propoxylate	2, 3
D-글루코스데실옥틸에테르	D-glucose decyloctyl ether	2, 3
N-옥테닐 무수 호박산	N-Octenyl succinic anhydride	2, 3
PCANA트륨	Sodium PCA	2, 3
α -라우릴-오메가-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	α -Lauryl-omega-hydroxypoly(oxyethylene)	1, 2, 3
α -올레핀설포산나트륨 (색소)	α -olefin sulfonate(AOS)	1, 2, 3
식용색소 녹색 제3호	Fast green FCF	1,2,3
녹색 201호	Alizarine Cyanine Green F	2, 3
녹색 202호	Quinizarine green SS	2, 3
녹색 204호	Pyranine Conc	2, 3
녹색 2호	Light green SF yellowish	2, 3
녹색 401호	Naphthol green B	2, 3
녹색 402호	Guinea green B	2, 3
식용색소 적색 제2호	Amaranth	1, 2, 3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Alura red(Food Red 40)	1, 2, 3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New Coccin(or Ponceau 4R)	1, 2, 3
적색 103호의 (1)	Eosine YS	2, 3
적색 104호의 (1)	Phloxine B	2, 3
적색 104호의 (2)	Phloxine BK	2, 3
적색 105호의 (1)	Rose bengal	2, 3
적색 105호의 (2)	Rose bengal K	2, 3
적색 106호	Acid Red	2, 3
적색 201호	Lithol Rubine B	2, 3
적색 202호	Lithol Rubine BCA	2, 3
적색 203호	Lake red C	2, 3
적색 204호	Lake red CBA	2, 3
적색 205호	Lithol red	2, 3
적색 206호	Lithol red CA	2, 3
적색 207호	Lithol red BA	2, 3
적색 208호	Lithol red SR	2, 3
적색 213호	Rhodamine B	2, 3
적색 214호	Rhodamine B Acetate	2, 3
적색 215호	Rhodamine B Stearate	2, 3
적색 218호	Tetrachloro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19호	Brilliant lake red R	2, 3
적색 220호	Deep Maroon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적색 221호	Toluidine red	2, 3
적색 223호	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25호	Sudan III	2, 3
적색 226호	Helindon Pink CN	2, 3
적색 227호	Fast Acid magenta	2, 3
적색 228호	Permaton red	2, 3
적색 230호의 (2)	Eosine SK	2, 3
적색 401호	Violamine R	2, 3
적색 404호	Brilliant fast scarlet	2, 3
적색 405호	Parmanent red F5R	2, 3
적색 503호	Ponceau R	2, 3
적색 504호	Ponceau SX	2, 3
적색 506호	Fast red S	2, 3
식용색소청색 제1호	Brilliant blue FCF	1, 2, 3
식용색소 청색 제2호	Indigocarmine	1, 2, 3
청색 제3호	Patent blue VF	2, 3
청색 201호	Indigo	2, 3
청색 202호	Patent blue NA	2, 3
청색 203호	Patent blue CA	2, 3
청색 204호	Carbanthrene blue	2, 3
청색 205호	Alphazurine FG	2, 3
청색 403호	Sudan blue B	2, 3
청색 404호	Phthalocyanine blue	2, 3
식용색소 황색4호	Tartrazine	1, 2, 3
식용색소 황색5호	Sunset yellow FCF	1, 2, 3
황색 201호	Fluorescein	2, 3
황색 202호의 (1)	Uranine	2, 3
황색 202호의 (2)	Uranine K	2, 3
황색 203호	Quinoline yellow WS	2, 3
황색 204호	Quinoline yellow SS	2, 3
황색 205호	Benzidine yellow G	2, 3
황색 401호	Hanza yellow	2, 3
황색 403호의 (1)	Naphthol yellow S	2, 3
황색 406호	Metanil yellow	2, 3
황색 407호	Fast Light yellow 3G	2, 3
등색 201호	Dibromofluorescein	2, 3



원료명(한글)	원료명(영문)	구분(종)
등색 203호	Permanent orange	2, 3
등색 204호	Benzidine orange G	2, 3
등색 205호	Orange II	2, 3
등색 206호	Diiodofluorescein	2, 3
등색 207호	Erythrosine yellowish NA	2, 3
등색 402호	Orange I	2, 3
자색 201호	Alizurine purple SS	2, 3
자색 401호	Alizurol purple	2, 3
갈색 201호	Resorcin Brown	
흑색 401호	Naphthol blue black	2, 3
(향료)		
구연산 향료	Citrus fragrance	1, 2, 3
레몬향	Perfume, Lemon flavor	1, 2, 3
사과향	Apple fragrance	1, 2, 3
스위트 오렌지 오일	Sweet orange oil	1, 2, 3
시트랄	Citral (3,7-dimethyl-2,6-octadienol)	2, 3
오렌지엠펜센스(오렌지향)	Orange essence (Orange fragrance)	1, 2, 3
천연레몬오일	Natural lemon oil	1, 2, 3
텐시드향	Tensid flavor	2, 3
L-멘톨	L-menthol	1, 2, 3

2*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에 한정

5. 사용기준

- 1)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 이상 담그어서는 아니된다.
- 2)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실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 3)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 4)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1종 세척제는 2종 또는 3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척제는 1종 또는 2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2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말한다.



별표 4. 행굼보조제의 규격 및 기준

1. 정의

행굼보조제라 함은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규격

- 1) 메틸알콜 : 1 mg/g 이하(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한다)
- 2) 비소 : 0.05 ppm 이하(사용농도로서)
- 3) 중금속 : 1 ppm 이하(사용농도로서)
- 4) 형광증백제 : 불검출

3. 시험방법

- 1) 메틸알콜
[별표 3] 세척제의 기준 및 규격 3. 시험방법 2) 메틸알콜에 따라 시험한다.
- 2) 비소
[별표 3] 세척제의 기준 및 규격 3. 시험방법 3)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
- 3) 중금속
[별표 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3. 시험방법 4)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 4) 형광증백제
[별표 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3. 시험방법 5) 형광증백제에 따라 시험한다.

4. 제조기준

- 1) 행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나”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에 허용된 식품첨가물 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것으로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2) 1)항에 해당되지 않은 성분을 행굼보조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사용기준

행굼보조제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농도를 “별표 나”의 규정사용농도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나

번호	성분명		사용농도
	한글	영문	
1	구연산	Cit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 monosodium salt	760ppm 이하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0.3ppm이하



번호	성분명		사용농도
	한글	영문	
4	α -라우로일-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α -Lauroyl- ω -hydroxypoly(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농도제한 없음
5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농도제한 없음
6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농도제한 없음
7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8	알킬(C12-15)폴리에틸렌글리콜	Linear alcohol 12-13mole ethoxylate (Alkyl(C12-15) polyethyleneglycol)	7.14ppm
9	α -알킬(C11-C15)-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	α -Alkyl(C11-C15)- ω -hydroxypoly (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18moles	농도제한 없음
10	α -알킬(C10-C14)-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 -Alkyl(C10-C14)- ω -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11	α -알킬(C12-C15)-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 -Alkyl(C12-C15)- ω -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농도제한 없음
12	α -알킬(C12-C18)-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 -Alkyl(C12-C18)- ω -hydroxypoly (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13	에탄올	Ethanol	농도제한 없음
14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Ethanol, 2-(2-ethoxyethoxy)-	농도제한 없음
15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etra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16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disodium salt	1400 ppm 이하
17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아알킬렌글리콜	Alkyl(C12-C15)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70-77°C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807	농도제한 없음
18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아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90-100°C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농도제한 없음
19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농도제한 없음
20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1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2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 (Calcium stearate)	16 ppm 이하
23	옥탄산	Octanoic acid	52 ppm 이하
24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46 ppm 이하



번호	성분명		사용농도
	한글	영문	
25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2-ethylhexyl sulfate(Octyl sodium sulfate)	20ppm 이하
26	요소	Urea	농도제한 없음
27	인산	Phospho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8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sodium salt	350ppm 이하
29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sodium salt	5,916 ppm 이하
30	젖산	Lactic acid	138ppm 이하
31	초산	Acetic acid	290ppm 이하
32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농도제한 없음
33	큐멘설포산나트륨	Cum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4	n-클로로-4-메틸벤젠설포아미드나트륨	Benzene sulfonamide, n-chloro-4-methyl,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35	키실렌설포산나트륨	Xyl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6	톨루엔설포산나트륨	Tolu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7	톨루엔설포산칼륨	Toluene sulfonate, potassium salt	40ppm 이하
38	α, α -트리메틸-3-시클로헥산-1-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 α, α , 4-trimethyl-	농도제한 없음
39	폴리실록산베타인	Polybetaine polysiloxane copolymer	2.14ppm
40	폴리알킬렌글리콜(에틸렌-프로필렌)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400	농도제한 없음
41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Polyethylene glycol(400) monolaurate	농도제한 없음
42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MW 2400 -3500)	농도제한 없음
43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리콜 n-알킬 에테르, C12-C15	PEG/PPG n-alkyl ether, C12-C15	농도제한 없음
44	폴리(옥시-1,2-에탄디일), α -(1,1,3,3-테트라메틸부틸), 페닐- ω -하이드록시, 페놀 1분자와 4-14분자의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물)	Poly(oxy-1,2-ethanediyl), α -(1,1,3,3-tetra methylbutyl) phenyl- ω -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농도제한 없음
45	폴리(옥시에틸렌)(1분자) α -알킬(C12-C15)- ω -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황산나트륨	Sodium- α -alkyl(C12-C15)- ω -hydroxy poly (oxyethylene) sulfate with the poly (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농도제한 없음
46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112ppm
47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머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 (MW 2,800)	농도제한 없음



별표 5. 기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및 1회용 젓가락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5-7호)에 따른다

2. 위생종이

1) 냅킨

(1) 규격

형광증백제 : 불검출

(2) 시험방법

① 장치

자외선 램프

② 시약 및 시액

㉠ 0.1% 암모니아수

㉡ 10% 염산 : 염산 23.6 mL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③ 예비시험

어두운 곳에서 이 품목에 365 nm를 주파장으로 하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색~청백색 형광의 유무를 관찰한다. 형광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시험을 한다.

④ 본시험

㉠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을 가로 10 cm, 세로 10 cm(100 cm²)의 크기로 자른다. 이 때 검체가 100 cm² 미만일 때에는 합하여 동일면적이 되도록 한다. 따로 200 mL의 용량의 비이커에 물 100 mL를 넣고 0.1% 암모니아수 몇 방울을 가해주고 잘 저어 준 다음 미알칼리성(pH 7.5~9)으로 한다. 이 액에 시료를 넣고 때때로 느리게 저어주면서 약 10분간 침출한 후 유리면을 이용하여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시험용액에 10% 염산 1~2방울을 가하여 약산성(pH 3~3.5)으로 한 다음 이에 미리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형광이 없는 거즈(2×4 cm)를 넣고 약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온한다. 거즈를 꺼내 물로 씻고 짠 다음 암실에서 자외선을 거즈에 약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조사할 때 거즈 전체가 청백색의 형광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2) 물종이류(식품접객업소등에서 물수건 대용으로 손세척에 사용하는 물종이류에 한한다)

(1) 규격

① 형광증백제 : 불검출

② 일반세균 : 2,500cfu/g이하

③ 대장균 : 음성

④ 살균제·보존료 : 식품위생법¹⁾에 의한 첨가물 성분에 한함(첨가시 성분명 표기)

(2) 시험방법

① 형광증백제

1) 냅킨 (2)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1) (참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16-124호(2016.11.16.)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② 일반세균

일반세균은 표준평판법으로 측정한다. 표준평판법은 검체와 표준한천배지를 페트리 접시 중에서 혼합 응고시켜 배양 후 발생한 세균의 집락수로부터 검체 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표준평판균수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 표준한천배지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중온균의 수를 말한다.

㉓ 배지

표준한천배지(균수측정용) : Standard Methods Agar(Plate count Agar)

Tryptone	5.0 g
Yeast Extract	2.5 g
Dextrose	1.0 g
Agar	15.0 g

위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pH 7.0±0.2로 조정후 121℃로 15분간 멸균한다.

㉔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을 멸균유리봉과 멸균스파테르 등으로 잘 혼합한 후 일정량(10~25 g)을 취하여 멸균용기에 넣고 9배 양의 멸균생리식염수와 혼합하여 덮개를 하고 무균 실험대 안에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㉕ 시험조작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씩 멸균 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로 유지한 표준한천배지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검체와 배지를 잘 섞고 냉각 응고시킨다. 특히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은 20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냉각 응고시킨 페트리접시는 거꾸로 하여 35±1℃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이 때 대조시험으로 검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 1 mL를 배지에 가한 것을 대조로 하여 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 및 조작이 무균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배양후 즉시 집락계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한다. 1평판당 30~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집락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㉖ 세균수의 기재보고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 g중의 세균수를 기재 또는 보고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제한된 것에서 발육한 집락을 측정된 수치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평판에 있어서의 집락수는 상당 희석배수로 곱하여 그 수치가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1 g중의 세균수 몇 개라고 기재 보고하며, 동시에 배양온도를 기록한다.

이 산출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표준”이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기록하는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를 4사 5입하여 유효숫자를 2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한다.

③ 대장균

대장균은 한도시험으로 판정한다. 한도시험방법은 일정한 한도까지 균수를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㉗ 배지

㉗ ㉗ EC배지(EC broth)

Peptone	20.0 g
Lactose	5.0 g
Bile salt mixture	1.5 g
Dipotassium phosphate	4.0 g
Monopotassium phosphate	1.5 g
Sodium chloride	5.0 g

위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pH 6.9±0.2로 조정하여 시험관에 분주하여 발효관을 넣은 후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㉗ ㉗ EMB한천배지

Peptone	10.0 g
Lactose	5.0 g
Sucrose	5.0 g
Dipotassium phosphate	2.0 g
Eosin Y	0.4 g
Methylene Blue	0.065 g
Agar	13.5 g

위의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pH 6.8±0.2로 조정한 후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㉗ ㉗ 유당배지(Lactose Broth)

Peptone	5.0 g
Beef Extract	3.0 g
Lactose	5.0 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 mL에 녹여 pH 6.9±0.2로 조정한 후 발효관에 분주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㉗ ㉗ 시험용액의 조제

2) 물종이류 (2) 시험방법 ㉗ 일반세균 ㉗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㉗ ㉗ 시험조작

시험용액 1 mL씩을 3개의 EC배지에 접종하고 44.5±0.2℃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이때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발효관으로부터 1백금이를 EMB평판배지에 희석접종하여 35±1℃로 24±2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 집락(전형적 집락이 없을 때에는 전형적인 집락에 유사한 집락 2개이상)을 취하여 유당배지 및 보통한천사면배지에 각각 이식한다(전형적 집락과 유사한 집락을 취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배지에 각각 이식한다.) 유당배지에 접종한 것은 35±1℃로 48±3시간 배양하고 보통한천사면배지에 접종한 것은 35±1℃로 24±2시간 배양한다. 유당배지에서 가스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고 검경후 그람염색, 무아포성간균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3. 이쑤시개

1)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 ① 재질규격(mg/kg)
 - ㉠ 납 : 100 이하
 - ㉡ 카드뮴 : 100 이하
- ② 용출규격(mg/L)
 - ㉠ 중금속 : 1.0 이하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 증발잔류물 : 30 이하

(3) 시험방법

㉠ 납 및 카드뮴

㉡ 장치

원자흡광광도기

㉢ 표준용액의 조제

㉠ 납표준용액 : 질산납(II)(Pb(NO₃)₂)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 취해 0.1 mol/L 질산을 가하여 2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용액으로 한다.

납표준용액 1 mL = 5 μg Pb

㉡ 카드뮴표준용액 : 금속카드뮴(cadmium, Cd) 100 mg을 10% 질산 50 mL에 녹이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0.1 mol/L 질산을 가하여 1,000 mL로 한 액을 카드뮴표준원액으로 한다. 카드뮴표준원액 10 mL를 취해 0.1 mol/L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다시 이 액 5 mL를 취해 0.1 mol/L 질산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카드뮴표준용액으로 한다.

카드뮴표준용액 1 mL = 0.5 μg Cd

㉣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 1.0 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석영제 또는 내열유리제 도가니에 취한다. 황산 2 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나지 않고 대부분이 탄화될 때까지 서서히 가열한다. 이를 다시 약 450℃의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회화한다. 이 때, 도가니의 내용물이 완전히 회화될 때 까지 식힌 후 내용물을 황산에 적시고 다시 가열하는 조작을 반복한다. 식힌 후, 그 잔류물에 희석한 염산(1→2) 5 mL를 가하여 섞고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한다. 식힌 후 0.1 mol/L 질산을 가하여 녹이고, 불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여과하여 20 mL로 한 액을 납시험용액으로 한다. 다시 납 시험용액 2 mL를 취해 0.1 mol/L 질산을 가하여 20 mL로 한 액을 카드뮴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 화염방식(직접분무법)

광원램프(카드뮴의 시험에 있어서 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 시험에 있어서는 납중공음극관램프를 사용한다)를 켜고, 분광기를 납 및 카드뮴에 대응하는 분석과장에 맞춘 다음, 적당한 전류값과 슬릿폭을 설정하고, 가스(아세틸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사용한다)에 점화시킨 후 가스 및 압축공기의 유량을 조절하고 용매를 화염 중에 분무시켜서 영점을 맞춘다. 이어서 시험용액 또는 표준용액을 화염 중에 분무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납의 시험에



있어서는 파장 283.3 nm에서, 카드뮴의 시험에 있어서는 파장 228.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납표준용액 및 카드뮴표준용액의 흡광도 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㉞ 전기가열방식

광원램프(카드뮴의 시험에 있어서 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 시험에 있어서 납중공음극관램프를 사용한다)를 켜고, 분광기를 납 및 카드뮴에 대응하는 분석파장에 맞춘 다음, 적당한 전류값과 슬릿폭을 설정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또는 표준용액의 일정량을 전기가열로에 주입하고, 적당한 유량의 가스를 흘리고, 적당한 온도, 시간 및 가열 모드에서 건조시키고 회화시킨 다음, 원자화하여 그 흡광도를 측정한다. 납의 시험에 있어서 파장 283.3 nm에서, 카드뮴의 시험에 있어서 파장 228.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납표준용액 및 카드뮴표준용액의 흡광도 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㉟ 중금속

㉠ 시약 및 시액

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을 물 10 mL 및 글리세린 30 mL의 혼액에 녹인다.

㉡ 표준용액의 조제

납표준용액 : 질산납(II)($Pb(NO_3)_2$)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 취해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용액으로 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 g Pb

㉢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을 물로 잘 씻은 후 표면적 1 cm²에 대하여 2 mL의 비율로 60℃로 가열한 물에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60℃를 유지하면서 때때로 저어가며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시험용액 20 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4% 초산 20 mL와 물을 가하여 50 mL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2 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4% 초산 20 mL와 물을 가하여 50 mL로 하여 비교표준용액으로 한다. 양 액에 황화나트륨시액 2방울씩을 가하여 잘 섞어 5분간 방치한 후 양 관을 백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와 옆에서 보아 액의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이 비교표준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㊱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시약 및 시액

㉠ 회석한 황산(1→3) : 증류수 200 mL에 황산(H_2SO_4) 100 mL를 저으면서 천천히 넣어 제조한다.

㉡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 150~200℃에서 1~1.5 시간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옥살산나트륨($Na_2C_2O_4$) 0.6700 g을 물에 녹여 1 L로 하여 갈색병에 보존하고, 조제 후 1개월 내에 사용한다.

㉢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 과망간산칼륨($KMnO_4$) 0.31 g을 물에 녹여 1 L로 한 후 갈색병에 보존한다. 사용 시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표정한다.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표정>



삼각플라스크에 물 100 mL, 희석한 황산(1→3) 5 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 넣고 5분간 끓인 다음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 가하여 탈색시킨 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을 때까지 첨가한다. 이 액에 다시 희석한 황산(1→3) 5 mL와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 넣고 5분간 끓인 다음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 가하여 탈색시킨 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적정한다. 적정에 소비된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량(mL(a))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역가(f)를 구한다.

$$f = \frac{10}{a-5}$$

㉑ 시험용액의 조제

㉒ 중금속 ㉓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㉔ 시험조작

삼각플라스크에 물 100 mL, 희석한 황산(1→3) 5 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 넣고 5분간 끓인 후 액을 버리고 물로 씻는다. 이 삼각플라스크에 시험용액 100 mL를 취해 희석한 황산(1→3) 5 mL를 가하고 다시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10 mL를 가하여 5분간 끓인 다음 가열을 중지하고 즉시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 가하여 탈색시킨 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을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식에 따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 구한다.

$$\text{과망간산칼륨 소비량(mg/L)} = \frac{(a-b) \times f \times 1,000}{100} \times 0.316$$

a : 본시험의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적정량(mL)

b : 공시험의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적정량(mL)

f :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역가

㉕ 증발잔류물

㉖ 시험용액의 조제

㉗ 중금속 ㉘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㉙ 시험조작

시험용액 200~300 mL를 미리 105℃에서 건조시킨 중량을 알고 있는 백금제 또는 석영제의 증발접시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이어서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 중에 방냉한다. 이를 식힌 후 칭량하여 증발접시의 전후의 무게차 a(mg)를 구하고 다음 식에 따라 증발잔류물의 양을 구한다.

$$\text{증발잔류물(mg/L)} = \frac{(a-b) \times 1,000}{\text{시험용액 채취량(mL)}}$$

b : 시험용액과 같은 양의 침출용액에 대하여 얻은 공시험치(mg)

(2) 목제

① 용출규격(mg/L)

㉚ 중금속 : 1.0 이하

㉛ 비소 : 0.1 이하

㉜ 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② 시험방법

㉠ 중금속

㉠ 시약 및 시액

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을 물 10 mL 및 글리세린 30 mL의 혼액에 녹인다.

㉡ 표준용액의 조제

납표준용액 : 질산납(II)(Pb(NO₃)₂)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용액으로 한다.

$$\text{납표준용액 } 1 \text{ mL} = 10 \text{ } \mu\text{g Pb}$$

㉢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직접 음식물 등과 접촉하지 않은 부분이 착색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제외한다)을 물로 잘 씻은 후 검체 1 g에 대하여 20 mL의 비율로 60°C로 가열한 물에 검체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60°C를 유지하면서 때때로 저어가면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시험용액 50 mL를 백금제, 석영제 또는 내열유리제 도가니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한다. 이에 황산 2 mL를 가하여 천천히 가열하여 황산의 흰연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여 대부분이 탄화가 될 때까지 가열한다. 화력을 강하게 하면서 약 450°C에서 가열 회화하여 거의 백색이 될 때까지 이 조작을 반복하고, 이를 식힌 후 잔류물에 4% 초산 20 mL를 넣고 가온하여 잔류물을 녹인 다음 4% 초산을 가하여 50 mL로 한다. 이 액 20 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물을 가하여 50 mL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2 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4% 초산 20 mL와 물을 가하여 50 mL로 하여 비교표준용액으로 한다. 양 액에 황화나트륨시액 2방울씩을 가하여 잘 섞어 5분간 방치한 후 양 관을 백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와 옆에서 보아 액의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이 비교표준용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소

㉠ 중금속 ㉢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시험용액 10 mL를 사용하여 [별표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3. 시험방법 3)비소에 따라 시험한다.

㉡ 허용의 타르색소

㉠ 표준용액의 조제

색소표준용액 : 0.05~0.1%의 수용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 시험용액의 조제

㉠ 중금속 ㉢ 시험용액의 조제한 시험용액이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용액을 농축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 시험조작

크로마토그래피용 여과지의 끝에서 40 mm의 곳에 연필로 줄을 긋고 그 위에 시험용액과 색소표준용액을 각각 20 mm의 간격으로 미량 피펫 또는 모세관으로 직경 약 5 mm의 원이 되게 찍고 말린다. 이 여과지를 규정의 전개용매를 넣은 용기에 여과지가 기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직으로 매달고 하단 약 10 mm를 전개용매 중에 담그어 뚜껑을 닫아 방치한다. 용매가 반점에서 13~25 cm의 높이까지 상승하였을 때 여과지를 건져내어 말린 다음, 시험용액과 색소표준용



액으로부터 전개된 반점의 위치와 색을 처음에 자연광, 다음에 자외선(365 nm)에서 비교 관찰한다.

<전개용매>

- ㉓ 아세톤 : 이소아밀알코올 : 물(6:5:5)
- ㉔ n-부탄올 : 무수에탄올 : 1%암모니아수(6:2:3)
- ㉕ 20% 에탄올용액 : 5% 암모니아수(1:1)

(3) 전분제

- ① 재질규격(%)
 - 수분 : 13 이하
- ② 용출규격(mg/L)
 - ㉖ 중금속 : 1.0 이하
 - ㉗ 비소 : 0.1 이하
 - ㉘ 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③ 시험방법

㉙ 수분

㉑ 장치

건조기

㉒ 시험조작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칭량접시에 검체 3~5 g을 정밀히 달아 뚜껑을 약간 열어 넣고 105~110℃로 맞춘 건조기에 넣어 3~5시간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중에서 약 30분간 식히고 무게를 단다. 다시 칭량접시를 1~2시간 건조하여 항량이 될 때 까지 같은 조작을 반복한다. 일반적인 것은 1회에 4시간 건조하여 수분량을 측정한다.

$$\text{수분 (\%)} = \frac{b - c}{b - a} \times 100$$

a : 칭량접시의 무게(g)

b : 칭량접시와 검체의 무게(g)

c : 건조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g)

㉓ 중금속

㉑ 시약 및 시액

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을 물 10 mL 및 글리세린 30 mL의 혼액에 녹인다.

㉒ 표준용액의 조제

납표준용액 : 질산납(II)(Pb(NO₃)₂)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원액으로 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납표준용액으로 한다.

$$\text{납표준용액 1 mL} = 10 \mu\text{g Pb}$$

㉓ 시험용액의 조제

이 품목을 물로 잘 씻은 후 검체 1 g에 대하여 20 mL의 비율로 60℃로 가열한 물에 검체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60℃를 유지하면서 때때로 저어가며 30 분간 방치한다.

㉔ 시험조작

시험용액 20 mL를 사용하여 ① 합성수지제 ③ 시험방법 ④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 ㉔ 비소
 - ㉕ 중금속 ㉔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시험용액 10 mL를 사용하여 [별표3]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3. 시험방법 3)비소에 따라 시험한다.
 - ㉖ 허용외타르색소
 - ㉗ 중금속 ㉔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조제한 시험용액이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용액을 농축하여 (2) 목제 ㉔ 시험방법 ㉕ 허용외타르색소에 따라 시험한다.
- 2) 제조기준(목제에 한한다)
- (1)이쑤시개를 제조할 때에는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2)이쑤시개는 표면이 매끄럽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시행 1997.12.17) 제38조관련 별표 6]

I. 국내제조 위생용품

가. 일반사항

- (1) 표시항목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내부에 표시할 수 있다.
- (2)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 표시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한글표시보다 크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품의 경우에는 그 수출대상국의 공용어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3)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의 표시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 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하는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제품을 적정사용량이상 과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를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6)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등에서 타인이 제조한 위생용품을 판매자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자 및 당해판매업등의 회사명, 회사의 소재지, 반품교환 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

제품명은 검정기관에서 검정받은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1)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수입)업소명외의 판매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업소명은 제조(수입)업소명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연월일

(1) 제품명 가까운 곳에 5호활자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 “○년 ○월 ○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명 가까운 곳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알아보기 쉬운 밀봉된 면에 표시한다.

마. 제조업의 신고(수입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신고수리관청에서 부여받은 제조업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중량·용량 또는 수량

내용물에 대하여 용량·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중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원재료 및 함량등(기타 위생용품 제외)

(1) 재료명과 그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혼합제제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관상 주의(기타 위생용품 제외)

보관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반품

변질·파손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이 요구되는 경우를 위하여 그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차. 유통기간(기타 위생용품 제외)

유통기간이 제한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그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II. 수입 위생용품

국내제조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른다(수출위생용품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8

영업 관리

가. 출입·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 영업 또는 제조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나.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등에 대하여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제조시설이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및 설비의 개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폐기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으로서 공중위생상 극히 해로운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9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14조(시설기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개수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시설·화장실 및 기타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개수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법 제14조2(제조업의신고등)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15조(규격 및 기준)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의 주성분 및 함량이 30%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정지 10일 및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0일 및 당해 제품폐기	영업장폐쇄 명령 및 당해 제품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의 주성분 및 함량이 20% 이상 3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정지 10일 및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0일 및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 및 당해제품폐기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의 주성분 및 함량이 10% 이상 2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세척제의 주성분 및 함량이 1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주성분외의 성분이 규격 및 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7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16조(자체검사등의 실시)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자체검사를 2년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바) 법 제18조(표시기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자격이 미달된 위생관리인을 둔 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 업 장 폐쇄명령
(아) 법 제20조(출입·검사)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기타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자) 법 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차)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 업 장 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한 때	영 업 장 폐쇄명령		



10 과태료 처분

-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제조업자 : 50만원
-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5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0만원
- 시설 및 설비의 개수·개선명령에 위반한 영업자등 : 60만원

11 벌 칙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생용품을 수입·제조 또는 판매한 자

다. 100만원이하의 벌금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을 판매한 자
-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Ⅲ 수입 위생용품 관리



1 수입 위생용품 신고

가. 신고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수입신고서
- 첨부서류
 -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원료인 경우에 한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신고기관

- 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
-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에는 수입화물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위생용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외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것



- 정부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기증 등의 목적으로 반입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관할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것

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 수수료

- 위생용품
 - 서류검사 : 2천3백원
 - 관능검사 : 2만원
 - 정밀검사 : 2만원
- 전자유기기구 및 그 부분품 : 1만원
- 수수료의 면제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승인을 얻은 위생용품
 - 세관장이 공매절차의 진행과정중 검사 의뢰하는 위생용품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가. 검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청(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에 한한다)
- 국립검역소(서울·부산·인천검역소를 제외한다)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종류	대 상
서류검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승인을 얻은 위생용품
관능검사	(1) 제조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2) 서류검사대상이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정밀검사	(1)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2)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 (3) 부적합된 위생용품과 같은 것을 재수입하는 위생용품 (4)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이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5)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비고

- ① “서류검사”라 함은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② “관능검사”라 함은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색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
- ③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규격 및 기준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로서 서류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다. 검체의 수거

-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적정량의 검체를 수거하여야 한다.
- 검체수거는 당해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 관계공무원이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검체의 시험

-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이 공중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위생용품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위생용품 검사기관은 송부 받은 검체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의뢰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신고수리된 위생용품과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명, 성분 배합비율(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는 재질) 및 제조공정이 같은 동일제품 으로서 위생상 위해요소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정밀 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불합격품 처리

- 검사결과 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 위생용품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는 경우
 - 통관 후 가공·가열·선별 등의 처리에 의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재검사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국립검역소장은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국립검역소장과 관할세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검사시의 유의점

- 수입하는 위생용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는 원칙적으로 통관 절차 완료 전에 항구·공항의 창고, 부두 하역장, 선박 등에서 행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세관의 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미리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수입 신고증 교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검역소장은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수입신고증 교부

4

대장관리 및 보고

- 위생용품신고수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 수입신고 상황 보고
 -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IV

위생교육



☞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1

위생교육 개요

가. 실시기관

교육 대상	교육 기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2호의다목에 의한 영업자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영업자	없음

* 단, 위생용품제조업은 현재 교육기관이 없어 위생교육실시 불가능

나.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다. 위생교육 대상

-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라. 지자체간 교육수료 인정

- 공중위생영업자가 타 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위생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 당시 기준으로 관할 구역의 공중위생영업자(영업신고자 및 지위승계수리에 따른 영업자), 즉 교육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 강의 등과 관련하여 실시단체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공중위생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하고, 교육시간 내에 물품판매 등 교육취지를 저해하는 행위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 6 편

질의회신



I

숙박업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당사자등"의 범위 관련

가. 민원요지

- 숙박업소에서 종전영업자가 사용해 오던 침대 등 비품의 실제 소유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자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소에서 종전영업자가 사용해 오던 침대 등 비품의 실제 소유자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비품 등의 실제소유자가 당사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등”의 정의 등 관련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2671(2014. 6. 26.)



숙박업소에 취사시설 설치

가.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II.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나, 에 숙박업(생활)의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썩크대는 취사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774(2014. 11. 4.)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육군훈련소 수료식후, 수료한 훈련병과 부모가 만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설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형태의 시설 및 설비(잠을 자지 않고 침구류와 수건 등 미제공)일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행위의 양태가 공중(사전적 의미로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함)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56, 2010.8.23.),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 7947 판결)될 것입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원룸형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손님이 잠을 자지 아니하며 잠시 머무는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침구류, 수건 등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159(2014. 7. 24.)



공중위생영업(숙박업) 행정처분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자가 숙박업소(호텔) 부동산만 매각 받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받은 후에 영업을 가능할 것이며, 특히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인 양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자가 “공중위생영업 시설물 전부를 인수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위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무신고 영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105(2014. 5. 23.)



관광숙박업 지위승계 관련

가. 질의요지

-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지위승계신고를 신청한 건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변경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관광사업의 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위승계의 대상이 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며, 또한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의 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도에서 질의한 관광숙박업의 지위승계 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1126(2014. 3. 20.)



대학교내 시설을 숙박시설로 이용시 숙박업 영업신고대상 해당여부

가. 질의요지

- A대학교에서 B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단체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등 시설을 제공하면서 교육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객실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만 받고 평소 A대학교 학생 교육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객실을 B단체 교육생에게 숙박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56, 2010.8.23.)에 따르면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영업성을



-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2013.12.12. 선고, 2013도7947)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학교내 시설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침대, 욕실 등) 등을 제공하며, 또한 손님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대학교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이용객이 B단체 소속된 사람에게 한정되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양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1년에 2~3회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도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830(2014. 9. 3.)



불법건축물에 영업중인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불법건축물에 영업 중인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질의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관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등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도6829, 2009.4.23.)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2602(2014. 6. 23.)



숙박업 신고대상 해당여부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피의자는 “○○○”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27개의 내실이 있고, 내실 안에는 싱글침대 1개, 컴퓨터, DVD플레이어 등과 화장실 겸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이 설치되어 있음
- 2시간을 기본으로 시간당 5,000원~9,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있으며, 하루 정액제, 4~5일, 일주일, 한달 등 이용자별 계약기간이 상이하며, 1년에 월 60만원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음. 이와 같은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소위 불특정다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객실 제공)제공 서비스가 주된 영업(용도)에 해당되고 그 서비스가 반복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될 때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10-0256, 2010.8.23)
- 귀 청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라는 상호의 내부에 27개의 내실이 있고, 내실 안에는 싱글침대 1개, 화장실 겸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사료되므로 이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 1항에 따라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1008(2014. 3. 12.)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가. 질의요지**

- 지역행사(영화제, 축구연맹전 등)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숙박업 영업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56, 2010.8.23.)에 따르면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2013.12.12. 선고, 2013도7947)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귀 대학교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기숙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며, 또한 손님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 대학교에서 제시한 숙박업 양태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757(2014. 8. 29.)



숙박업 용도지역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건축법」에 의거 숙박시설로 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숙박시설로 기재) 받은 경우 상업지역이 아닌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도 숙박업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이 입지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은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1408(2014. 4. 10.)



일부 층 또는 일부 객실(호실)로도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시, 건물전체로 한정해야 하는지 또는 건물 일부(층 또는 호실)로도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이 입지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오피스텔 건물 내부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일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층과 명백히 구분될 경우(예시 :



10층 건물 중 2~4층에 한해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층별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예시 : 10층 건물 중 2층 일부 객실, 3층 일부 객실, 4층 일부객실에 한해 숙박업 영업신고) 또는 객실(호실)별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복도, 계단 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접객대에 요금표 게시 등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준수되기 어렵고, 각종 사건사고 등 발생시 책임문제의 혼선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수인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455(2014. 6. 12.)



임시사용승인서를 득한 건축물의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가능 여부

가. 질의요지

-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서를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신고시 수리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건축물대장”을 “임시사용승인서”로 갈음(또는 대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대장”을 “임시사용승인서”로 갈음(또는 대체)이 가능한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2969(2014. 7. 11.)



집합건물내 일부객실을 제외한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집합건물내 2~19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180개 객실 중 4개의 객실(서로 다른 4개의 층에 1개씩 나뉘어져 있고,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만 제외 또는 4개의 객실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층수를 제외한 나머지 층의 객실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 I. 일반기준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 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가능할 것입니다.
- 귀 구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 구에서 질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객실(질의내용상 176개)의 경우 서로 다른 층에 분산되어 있는 4개의 객실(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과 독립된 장소인지, 또는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3874(2014. 9. 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대상 과징금처분 가능여부

가. 질의요지

- 관광숙박업소 내에서 숙박자에게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2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는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행위,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頒布)·판매·대여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④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귀 시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광숙박업소 내에서 숙박자에게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 제시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994(2014. 3. 12.)



행정처분 경감 관련

가. 질의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 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후 형사재판의 판결이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 시행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경감한 처분으로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별표 7」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에 행정처분권자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 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경감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행정처분권자(구청장)가 위반사항의 경중, 행정처분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5811(2014. 12. 19.)



휴양콘도미니엄 및 일반숙박업 관련

가. 질의요지

- 속초시 조양동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의 3, 4, 5층에 총 57개의 객실이 있으며, 57개의 객실에는 (주)A소유의 객실(6실)과 (주)B소유의 객실(49실) 및 기타 개인소유의 객실(3층 1실, 5층 1실)이 각각 혼재 되어 있으며,
 - (주)B가 3, 4, 5층의 57개 객실 중 개인소유의 객실(2실)을 제외한 본인소유의 객실(49실)과 (주)A로부터 운영을 위탁 받은 객실(6실)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 I. 일반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층의 객실 운영권자가 다수인 경우 (예시: 3층 2명, 5층 2명) 위생관리 등의 의무가 준수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안내실 설치와 간판 등의 설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숙박업소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면 허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5573(2014. 12. 11.)



대학기숙사의 일시적 숙박행위 시 숙박업 신고 여부

가. 질의요지

- ○○대학교가 12~14년 방학기간에 제천시가 개최하는 ‘국제음악영화제’의 행사관계자,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최기간 1주일 동안 1인당 7,000원~1만원의 실비를 받고 기숙사를 대여하였는데, 이 행위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숙박업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13년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지 않고 제천시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대학교에 기증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 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56, 2010.8.23.)에 따르면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영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2013.12.12. 선고, 2013도7947)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학교내 시설을 손님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침대, 욕실 등) 등을 제공하며, 또한 손님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대학교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이용객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할정되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양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1년에 1~2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655(2014. 10. 29.)



숙박업 미통보 관련

가. 질의요지

- “갑”이 “을”의 B상호의 숙박업을 경매 받아 A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 현재까지 숙박업을 하고 있음
- 2001년 “갑”이 “을”의 숙박업을 경매 받아 시설 보강 등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경우 2001년 법률상의 ‘개설의 의미’에 포함되는지?
- “갑”이 “을”의 숙박업을 경매에 의한 낙찰을 받아(2001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소 개설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하거나, 신고없이 현재(2014년)까지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 현행 법률에 의거 ‘공중위생영업 미신고’로 처벌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갑”이 “을”의 숙박업을 경매 받은 당시(2001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2.8.26.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 영업소 개설을 통보토록 하던 사항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고, 부칙<2002.8.26.> 제3항의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당시(2003.2.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0조에 별칙 조항을 두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을”의 숙박업을 경매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당시(2001년) 영업소 개설의 통보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설된 영업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설한 영업자를 기준으로 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관할 관청에 개설사실이 통보된 영업장을 인수하였더라도 인수한 영업자는 개설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을”의 영업소를 경매 받은 “갑”은 영업소 개설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2003.2.27.)까지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 부칙<2002.8.26.> 제3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없이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941(2014. 11. 11.)



숙박업 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숙박업이 신고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낙찰자는 숙박

업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받은 것으로 보고 지위승계를 수리 할 수 있는 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I. 일반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되어야 한다. II.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3조의2에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하도록 한 것은 종전 영업자(숙박업)가 신고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자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 영업자(숙박업)와 같이 공중위생업(숙박업)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라 함은 공중위생업(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인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를



- 전부 인수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숙박업이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 받은 부동산에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위 승계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4474(2014. 10. 20.)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관련

가. 질의요지

-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취사시설의 범위
 - 최근 오피스텔을 숙박업(일반)으로 용도 전환하는 사례와 관련, 숙박업(일반)으로 신고하는 업소의 객실에 쿡탑을 제외한 주방 개수대(씽크대) 설치의 가능 여부 및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II.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사시설의 설치는 숙박업(생활)에만 허용된 시설로서 숙박업(일반)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취사시설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숙박업(일반)에

- 설치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숙박업(생활)에 환기시설 또는 창문 등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한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는 것은 화기 사용에 대비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숙박업(일반)에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숙박업(일반)에 개수대(싱크대)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5245(2014. 11. 25.)



숙박업 상호 관련

가. 질의요지

-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해석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게스트하우스’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상 명칭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숙박업과는 주요 대상 및 이용목적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명칭으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386(2016. 7. 20.)



II

목욕장업



고충민원 회신

가. 민원요지 및 의견조치 내용

-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50m 떨어진 한증막(여성전용사우나)에서 매일 새벽 나무를 태워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천식 및 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
- 위 민원내용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만약 없다면 다른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II. 개별기준 ⇒ 2. 목욕장업(붙임1)에는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등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2. 목욕장업자(붙임2)에는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조명 및 환기, 그 밖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살펴 볼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는 목욕장에서 배출되는 연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민원인이 요청한 “한증막 연기배출 피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3784(2014. 9. 1.)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신고대상 해당여부 관련질의

가. 민원내용

- 개인병원(또는 의원) 내 목욕장업 시설(냉·온수조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 병·의원을 이용하는 손님(환자, 보호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목욕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2조제1항제3호에는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제외되는 시설로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목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물로 목욕하거나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병원(또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또는 보호자 등)의 경우 입원과 퇴원이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또는 의원) 시설내 목욕장을 이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원(또는 의원) 진료비 또는 기타 요금 등에 목욕장 시설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병원(또는 의원)내 냉·온수조 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우선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3123(2014. 7. 22.)



목욕장내 술 판매

-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목욕장업”의 정의 및 시설·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 관련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목욕장업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목욕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목욕장내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술을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목욕장업자는 과도한 음주자가 목욕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5780(2014. 12. 18.)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질의 1)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목욕장업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7. 판매시설일 경우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 질의 2) 집합건축물내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집합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한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소유자 1인만으로도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우선 충족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 후 영업을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영업을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는 「건축법」에 규정된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항은 건축법 소관사항으로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집합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한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소유자 1인만으로도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공유자간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157(2014. 7. 24.)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행정처분 관련질의

가. 질의내용

- 건물주는 2013.7~8월 A(전 영업자)를 상대로 목욕장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승소(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 미포함)하였으며, 지위승계 없이 B(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3.11.9.일부터 영업 중일 때 행정처분 관련 질의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



-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 제2항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의2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를 받은 후에 영업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인 양도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주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 영업자(질의 내용상 “B”)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받지 않고 목욕장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 영업자(질의 내용상 “B”)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053(2014. 5. 21.)



목욕실 및 탈의실 출입제한연령 관련질의

가. 질의요지

- 질의 1) 목욕장 입구에 만 4세이상 이성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질의 2)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 5세미만 이성을 출입금지하였을 경우 행정 제재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2.목욕장업자 ⇒ 라.그 밖의 준수사항 ⇒ (2)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나, 목욕장 입구에 만 4세 이상 이성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만 5세미만 남녀의 목욕실 및 탈의실 출입제한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자가 만 5세미만의 남녀에 대해 목욕실 및 탈의실에 출입금지를 하였다 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483(2014. 8. 12.)



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

가. 질의요지

- 목욕장 내 남·녀 구분 없이 격일제로 남자와 여자가 돌아가면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한 개의 목욕실만 설치하였을 경우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II. 개별기준 ⇒ 2. 목욕장업 ⇒ “라”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한 개의 목욕실만 가지고 남·녀 격일제로 운용할 경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용할 우려가 없기는 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취지상 남·녀 구분 없이 목욕실 운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873(2014. 9. 5.)



목욕장업 지위승계 관련

가. 질의요지

- 질의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절차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는 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목욕장업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욕장 내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인도명령이나 기타 물품 등에 대한 별도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 질의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구체적 기준 및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위생 및 난방설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에 포함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7-0341, 2007.10.17)).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여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인 양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에 대한 개별 사안별로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하였는지 불명확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분쟁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공중위생 담당공무원은 지위승계시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지위승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



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제처법령해석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3831(2014. 9. 3.)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07-0341, 2007.10.17.)



목욕장업 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영업 중일 때 가능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질의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직권폐업(철회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공중위생

-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받은 후에 영업을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신규영업자(질의내용상 “D”)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받지 않고 목욕장업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1777(2014. 5. 2.)



체력단련장 내 목욕장 설치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목욕장업이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체력단련장 내부의 목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해당 체력단련장이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목욕시설을 이용케 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회원의 대상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이 동 시설 운영비용에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5903(2014. 12. 24.)



목차

가. 질의내용

- 일정 시간(약 1시간 가량) 맥반석에 나무로 직접 불을 댔 후 일정 시간(약 4시간 30분) 휴막을 하고 이용객에게 개방을 하는 방식의 불가마에서 내부 온도가 120℃ 정도로써 내부의 맥반석 표면이 몸에 직접 닿는 즉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일 경우,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열된 맥반석 표면에 몸이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들레에 나무 재질의 기둥을 약 50cm 간격으로 세워 두고 주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업소의 이용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규정된 발열기는 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반석과는 구별되므로, 안전망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맥반석을 가열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설 및 설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용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는 것은 해당 영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시설기준으로 이미 전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개선명령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1120 (2014. 3. 19.)

**목욕업 신고대상 여부****가. 질의내용**

- 샤워시설 없이 단순히 열을 내는 찜질방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 샤워시설을 갖추고 찜질방 운영을 할 경우 목욕업 신고대상인지 여부
- 자유업종인 마사지샵에서 샤워시설 및 소규모의 찜질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목욕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면 목욕장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세 가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목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891(2014. 3. 7.)

**목욕장내 사고****가. 사건개요**

- 호텔 내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심 1.27미터 수영풀장에서 피해자와 (7세, 여-초등학생1학년) 부모가 손님으로 찾아와 부모는 찜질방에 있고 피해자와 같은 연령 또래 어린이들만 위 수영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건임

- 사고당시 안전관리와 기계실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은 기계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음

나. 질의사항

- 위 시설물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으로 신고가 수리된 부분이라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수영풀장) 정상적인 목욕장업 중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정상적인 영업이고, 관련법규(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별표4)상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할 군청 목욕장업 신고수리 담당공무원 판단임
- 위 시설물에 대해 관할군청 수영장 신고수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실시한 결과 수영장 신고에 적합한 필수요건 6개 항목 중 물깊이 기준(0.9-27미터 이하)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요건에 맞지 않고, 수영과 경기를 하기보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욕조 시설이므로 수영장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영장업 신고수리 담당공무원 판단임
- 법률적 요건에는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장업이라서 별도로 안전관리요원이 필요 없는 사안이지만 위와 같이 군청에서 판단한 내용처럼 목욕장업 영업 신고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다.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조에서‘목욕장업’이라 함은‘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또는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할군청 목욕장업 신고수리 담당 공무원의 판단과 같이 동 영업소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II.개별기준 2. 목욕장업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일반목욕장업으로 신고된 영업소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동 시설물은 목욕장업에 포함된 편의시설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영업소가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이 수영장업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하는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649(2014. 2. 19.)



영업자 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양도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양수인이 제출하였다면 영업자지위승계를 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해석요청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사안의 경우 영업양도, 상속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됨.

구강생활건강과-355(2014. 1. 27.)



양도양수(지위승계)

가. 질의배경

- 목욕장영업자이면서 목욕장소유자인 법인A는 신탁회사B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목욕장의 소유권을 신탁회사B에게 이전시키고 법인A는 목욕장을 운영·관리만 함
- 그 후 법인A는 목욕장내의 세신실, 스포츠맛사지실, 이용실, 나머지 목욕장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개인4명과 법인1(이하 '점유자(5명)')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케 함
- 소유권을 받은 신탁회사B는 목욕장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내었으나 여러번 유찰되자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욕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C는 목욕장의 유체동산(보일러시스템 및 헬스기구)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5명)들은 임차권과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C의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점유자(5명)들은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판결을 받음
- C는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목욕장의 점유자(5명)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강제 집행을 통하여 처리함

나. 질의내용

- C가 목욕장에 대하여 건물(시설) 및 설비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받았다면 법인A의 의사와 상관없이 C에게로 직권 양도양수(지위승계)가 가능한지
- 직권 양도양수(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법인A에 대한 청문절차가 필요한지
- 직권 양도양수(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된 등기부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유체동산경매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로 가능한지, 추가서류가 더 필요한지

다.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C는 목욕장에 건물에 대해서는 B와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유체동산(보일러 시스템 및 헬스기구)은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했다고 판단됩니다.
- 청문절차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서 제7조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등기부 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유체동산경매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867(2014. 3. 6.)



청소년입장

가. 질의내용

- 청소년이 단독으로 입장 할 수 있는 연령의 구체적 적용방법
- 청소년이 성년자와 동행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 업주가 확인하거나 동행자에게 징구하여야 할 서류
- 청소년이 성년자와 동행하지 않고 출입하고자 할 경우, 업주가 확인하거나 보호자에게 징구하여야 할 서류



나. 답변내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므로 단독입장 가능함
-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동반한 경우 입장이 가능함
- 청소년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입장이 가능하나 청소년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출입 사용 및 출입 허용 일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영업자의 확인 여부가 출입동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강생활건강과-519(2014. 2. 7.)



폐업집행문

가. 질의내용

- 건물주와 기존 영업주의 폐업신고 절차이행과 관련한 소송결과, 원고(건물주)가 승소한 결과에 따라 건물주가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목욕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간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폐쇄 조치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기 회신된 바 있습니다.

(생활위생팀-4762호, 2007.10.23.)

- 동사항의 경우,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건물주)에게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집행문이 발급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신고자가 아닌 원고(건물주)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54(2014. 1. 27.)



목욕장업 지위승계

가. 질의요지

- 기존부터 목욕업 영업을 하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목욕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목욕업 부동산 명도소송 및 경매에 의한 부동산 인수 일 경우에 그 판결문만으로도 목욕업 영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 지위승계신고관련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해석 상반> 재해석?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3조의2에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하도록 한 것은 종전 영업자가 목욕장 신고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자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 영업자와 같이 목욕장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라 함은 목욕장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인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한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목욕장을 인수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일러실, 탈의실, 발한실 등 시설은 건물에 포함된 부속물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시설물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의 상황에 대하여 확일적으로 포함 및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며, 사안별로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4368(2014. 10. 14.)

**목욕업 지위승계****가. 질의내용**

- 공매절차 따라 목욕장 시설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 기관(성북구청)은 목욕장 영업의 지위승계를 위해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제출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또는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시설집기(비품 등)의 인수 여부는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려는 자가 공매를 통해 목욕장 영업을 위해 관련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을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4376(2015. 7. 22.)



Ⅲ

미용업



속눈썹 연장술

가. 민원내용

- 속눈썹 연장술 관련 해당 미용업 변경 시행일에 대한 불만민원

나. 회신내용

- ‘속눈썹 연장술’의 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속눈썹에 인조가모를 붙여 연장시키는 화장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분야 중 미용업(화장·분장) 시험출제기준에 포함 되어 있어 새로이 분화된 미용업(화장·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사(메이크업) 실제 국가기술자격 합격자가 발생하는 일자(’16.9.23.) 이후에는 미용사(메이크업)합격자 외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음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건강과-6162(2016. 9. 29.)

- ‘속눈썹 연장술’이란 사전상 정의를 보면 속눈썹에 인조가모를 붙여 연장시키는 화장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행위는 미용업(화장·분장) 분야가 새로이 독립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 중 미용업(화장·분장)분야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동 용어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출제기준의 한 항목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5303(2016. 10. 11.)



공중위생영업소 시설·설비 기준

가. 민원내용

- 160㎡에서 20㎡만 사용하려고할 경우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네일샵을 할 때, 독립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중위생 영업장이 여타 다른 목적의 장소와 구분되어 위생·안전관리 목적 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독립된 공간으로 네일샵을 하려고 할 경우 당해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고정식의 칸막이 등의 구획으로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196(2016. 4. 27.)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병행처분

가. 질의내용

- 미용업(손톱·발톱)에서 무신고 의료행위(눈썹 문신 등)의 영업을 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서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과태료란 행정질서별로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부과·징수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위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과는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7814(2016. 12. 5.)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운영

가. 질의내용

- 의료기관 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유·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피부관리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대부분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위반 여부

나. 회신내용

-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3457(2016. 3. 21.)



가발 · 머리길이 연장술

가. 질의내용

- 가발영업은 미용업 신고대상인지 여부
- 본인 머리카락에 인조모 등을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미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단순히 제조된 가발을 사고파는 형태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머리카락에 인조모 등을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 중 머리카락 모양내기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3457(2015. 6. 8.)



이용업과 미용업

가. 질의내용

- 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가 2개의 장소(약 5km 거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에 대한 영업소 개설 제한 및 개설 시 거리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각각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신고 후 각 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목적 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106(2015. 4. 8.)

※ 단, 동일인이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를 각각 개설시 각 업종별 위생교육 등 영업자별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이어트

가. 질의내용

- 숙박업(영업장 면적 약 900㎡, 객실 28실)에서 일명 “다이어트 하우스”란 영업을 하면서 등록회비 ○○만원을 받고 회원 ○○명을 모집하여 합숙을 하면서 숙박, 미용업(피부), 식단조절, 운동, 힐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 등 피부미용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용업(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이어트하우스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를 하는 것은 미용업(피부)의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나, 다이어트 하우스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부관리 외 식단조절, 운동, 힐링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분야별로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소관 분야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강생활건강과-5303(2014. 11. 27.)



1인 2업소

가. 질의내용

- 미용업(일반) 면허를 취득한 자가 후에 미용업(피부)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한 영업장이 아닌 각각 다른 장소(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2개 업소)에 미용업(일반) 영업신고와 미용업(피부)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서 미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용사(일반) 면허를 취득한 자가 미용사(피부)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미용사 면허증에 추가로 표기되며, 영업신고증 또한 미용업(일반)에 미용업(피부)가 추가되어 한 장에 모두 표기됩니다. 따라서, 한 영업장이 아닌 각각 다른 장소(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2개 업소)에 미용업(일반) 영업신고와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521(2014. 10. 21.)



담배 진열 및 판매가능 여부

가. 질의내용

- 10평의 영업장 면적 중 8평을 미용업으로 신고하고, 2평을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별도의 공간에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의 I.일반기준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미용업소 내에 다른 영업자가 미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독립된 장소이거나 칸막이 등의 구획으로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되어 각각의 업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목적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가능하다”(구강생활건강과-4400, '13.11.6)고 기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미용업으로 신고된 장소와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장소는 칸막이 등의 구획으로 각각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되어야 하며, 미용업으로 신고된 장소내에서는 담배를 진열·판매할 수 없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618(2014. 2. 17.)



두피관리 행위의 미용업 신고대상 여부

가. 질의내용

- 머리를 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샴푸, 두피스케일링, 두피 마사지, 클렌징, 건조, 스타일마무리 등의 두피에 대한 관리를 하는 행위가 미용업 신고 대상 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일반)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이며,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을 모두 하는 경우 미용업(종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샴푸, 두피마사지, 스타일마무리 등은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일반)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2857(2014. 7. 4.)



분리구획

가. 질의내용

- A가정의학과와 B피부관리실은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나, A가정의학과 내에 B피부관리실을 별도의 공간(피부관리실 방을 따로 구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지만,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있으므로 독립된 장소로 보아 영업허가가 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I.일반기준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A가정의학과 내에 다른 영업자가 B피부관리실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공간(피부관리실 방)을 마련하면



각각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영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4450(2014. 10. 16.)



위생교육

가. 질의내용

- 미용업 영업자가 2014년 5월1일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7월22일 폐업신고를 하고, 9월18일 다시 개설을 하려면 신규위생교육을 또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제2항은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위생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5월1일 위생교육은 9월18일 새로운 영업신고 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4133(2014. 9. 25.)



지위승계

가. 질의개요

- 영업주 A씨는 2008.10월부터 건물주 B씨의 상가 4층을 임대하여 미용업을



해음. 건물주 B씨는 2013.7월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약 3천만원을 미납한 영업주 A씨를 상대로 2013.9월경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영업주 A씨는 2013. 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보받음. 2014. 5월 법원은 압류한 A씨의 영업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매집행 하였고, 이를 통해 건물주 B씨는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음. 현재 건물주 B씨는 같은 미용업을 하려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 임차인은 기존 영업주 A씨가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영업주 A씨는 2014. 5월 이후 실제로 영업을 하고있지 않고 현재 영업장의 시설물은 새 임차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장에 그대로 남아있음.

※ 영업주 A씨는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영업권을 주장하며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지 안함.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건물주가 영업장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및 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위 업소가 미용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지위승계가 가능한데, 만일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건물주가 영업목적이 아닌 폐업을 시키고자 하는거라면 건물주에게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3조의2제3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의 경우 무면허자인 건물주에게 지위승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권폐업

가. 질의내용

- 건물 소유자의 요청으로 미용업 영업신고가 직권 폐업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에 의거 1년간 동종 영업신고가 금지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업한 경우, 해당영업소에 시설물 멸실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확인을 거쳐 영업장 폐쇄로 종결하여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1219호, 2009.07.14.)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는 성매매 알선,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동종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동법 제11조의4제2항에 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라는 의미는 동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법」 위반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건물소유자의 요청으로 직권폐업이 된 후, 동종업을 신규로 영업신고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며, 법 해석상 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에 동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생활건강과-4938(2014. 11. 11.)



미용업 피부

가. 질의내용

- 피부관리사가 피부트러블 관리를 위해 단순면포나 농을 압출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의료법 기타 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란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않고 미용을 목적으로 단순면포나 농을 압출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피부미용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의료법 등 타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1385(2014. 4. 9.)



미용업 직권폐쇄

가. 질의개요

- 영업주 A씨는 2008.10월부터 건물주 B씨의 상가 4층을 임대하여 미용업을 해옴. 건물주 B씨는 2013.7월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약 3천만원을 미납한 영업주 A씨를 상대로 2013.9월경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영업주 A씨는 2013.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보받음. 2014.5월 법원은 압류한 A씨의 영업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매를 집행하였고 이를 통해 건물주 B씨는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음. 현재 건물주 B씨는 같은 미용업을 하려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 임차인은 기존 영업주 A씨가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영업주 A씨는 2014.5월 이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영업장의 시설물은 새 임차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장에 그대로 남아있음.

※ 영업주 A씨는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영업권을 주장하며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폐지 안함.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건물주가 영업장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및 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았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영업주 A씨가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폐쇄가 가능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영업주 A의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및 소모품 제외)이 경매를 통해 건물주 B에게 인수되었으므로 영업주 A는 사실상 영업을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2014.5월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
- 영업주 A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영업주 A 본인의 귀책사유(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건물주 B의 재산권과 새 임차인의 영업권이 훼손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문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직권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강생활건강과-3612(2014. 8. 22.)



IV 기 타



음료수공급관 등 세척업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대상 해당여부

가. 질의요지

-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 보관용기 및 공급관을 세척하는 청소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1조에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7호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등을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 보관용기 및 공급관”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되지 않고,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를 판매하는 업주 또는 그 종업원 등 특정인에 한해서 사용하는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생맥주를 포함한 각종 음료수 보관용기 및 공급관을 세척하는 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관리
용역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생활건강과-563(2014. 2. 12.)



코인빨래방 세탁업 영업 신고대상 여부질의

가. 질의요지

- 공중위생영업(세탁업)자가 직접 세탁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용객이 세탁기 등에 일정금액을 넣고 이용하는 “코인빨래방”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조항 제6호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세탁 요금을 받는지 여부, 세탁용 약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 기기를 조작, 활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면서, 세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석유계용제 등이 아니며 또한 타 관련 법령에도 규율 받지 않는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구강생활건강과-2554(2016. 7. 27.)

**행정처분 경감기준 차수적용 관련질의****가. 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4”에서 II. 개별기준의 2차 위반사항에 대한 경감기준의 적용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7]의 I. 일반기준 “4”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II.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 일반기준 “4”에는 II. 개별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 및 경감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사항의 차수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강생활건강과-1496(2014. 4. 16.)



V

법제처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나. 회 답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5058호(2014. 11. 17.)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79호(2014. 11. 24.)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나. 회 답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대상을 “손님”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성별에 무관하게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높이는 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남녀 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따라 성별을 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남녀 간 구별 없이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7 해석례 참조).

한편, 이용업 및 미용업의 영업대상이 남녀의 성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용업과 미용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제1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4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법령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사의 경우 이발·아이론·면도·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이고, 미용사의 경우 위 규정에서 준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도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이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그 자격의 취득요건 및 업무범위를 상호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가 상호교차하는 영역(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는 이용업의 “이발”과 미용업의 “머리카락자르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의 경우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영업에 공통적인 업무영역이 있음)에 대하여는 이용업무일 뿐 아니라 미용업무에 해당하여, 일견 중복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제1조 참조), 입법자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와 영업형태에 따른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을 뿐, 이발업 및 미용업의 영업 대상을 일정한 성별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1793호(2014. 5. 2.)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 순천시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나. 회 답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I. 일반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II.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하고 있을 뿐, 숙박업(일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I. 일반기준에서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될 것을 요하고 있고, II.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가목) 및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나목)을 설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숙박업(일반)에 대하여는 독립된 장소 동일 것을 요하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숙박업(일반)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 I. 일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며, 그 외의 시설 및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0. 17. 회신 07-034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순천시 허가민원과 - 27278(2014. 6.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보건복지부

가.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나. 회 답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그 제명 및 제1조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다수인이 동시에 공중위생영업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II. 개별기준 제2호라목의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탈의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미처 상정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3973(2014. 9. 15.)

제 7 편

부록(서식·참고자료)



부록

I. 관련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91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192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193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194
서식 제5호	진술서	195
서식 제6호	고발장	196
서식 제7호	게시문	197
서식 제8호	봉인물품 보관증	198
서식 제9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199
서식 제10호	봉인 물품대장	200
서식 제11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201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202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203
서식 제14호	명예위생감시원 위촉장	204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서식 제16호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서식	208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소명 :

위 치	층중 (지상, 지하) 층 호
면적(m ²)	
영업설비 개요 (도면)	
안내사항	<p>①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한 위법사항 발견시, 해당관련 부서에서 동 공중위생 영업신고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미용업의 경우 신고증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 할 경우 면허대여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공중위생영업장은 밀실 또는 유사시설의 설치가 불가합니다.</p>



[별지 제2호 서식]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1. 업소현황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적(m ²)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신고사항		
준수사항		
기타		

점검일시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예시)

○ ○ 구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수 신 : ○ ○ 법원 귀중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공중위생관리법 제23조와 관련입니다.
2. 아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동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 우리 시·군·구에 이의를 제기한 바,
3. 공중위생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과태료 재판(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의 고지 일자	. . .	과 태 료 금 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 ○ 구청장	이 의 제기일자	. . .

- 증거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원본 또는 등본 1부.
 2. 과태료처분 이의 제기 신청서 원본 또는 등본 1부.
 3. 기타 관계규정 등 1부. 끝.

20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상기 본인 등은 시 구 과에서 공중위생업소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 년 월 일 시 분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에서 무신고 영업을 경영하는 업소를 다음과 같이 적발하였기 진술합니다.

- 적발내용

영업장소		전화 번호	
업 종		업 소 명	
업 주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시 설			
규모(m)			
영업행위의 내용			
과거고발내용			
비 고	※ 1일평균 매상액 등 주요참고자료 기재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진술인 인
진술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주 소 :
- 성 명 :

2. 영업장소

- 업소명 :
- 소재지 :

3. 고발사유

상기 피 고발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현재까지 상기 영업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음

- 영업행위사실 :
- 영업의 형태 :
- 영업행위내용 :
- 과거 고발내용 :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 1) 고발인 진술서
- 2) 피고발인 확인서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게 시 문

○ 업소명 :

○ 소재지 :

위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위반업소이므로
이용 및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5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봉인물품 보관증

품 명	
보관장소	
봉인일시	

위의 물품은 ○ ○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책임하에 위의 소재지에서 보관하고 본인이 보관증 동 물품을 사용하거나 봉인을 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훼손치 아니하고 그 봉인의 효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 보관증을 제출 합니다.

주소 :

보 관 자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봉인용지 수불대장

연번	일자	수입	불출 장수	용지수량자내역			결 제		
				일련 번호	성 명	수량인	담 당	계 장	과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지 제11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자택전화		핸 드 폰	
주 소			
학 력			
주 요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20</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소속 성명 (인)</div>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진제출 : 반명함 3매(3×4cm)			



[별지 제13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발행 번호	구별 연번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진
				전 화 번 호	핸드폰	
				직 업	추천기관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별지 제14호 서식]

명예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시·도지사 (직인)</p>	

[별지 제15호 서식]

(예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사 진 (3×4cm)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규정에 의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 . . 시·도 지 사

제 - 호
1.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 하지 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목적으로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 20 년 월 일까지



(예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0mm	74mm
사 진 (49mm×40mm) (철인)	40mm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번호)	7mm	
(성 명)	7mm	
시·도	10mm	

(앞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64mm	74mm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mm	

(뒤쪽)



※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4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14포인트	명조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10포인트	명조체
위의 사람은증명함.	10포인트	명조체
이증을바랍니다.	8포인트	명조체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3) 색상은 파란색



부록

Ⅱ. 참고자료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참고 1	국내 미용 관련 학과	210
참고 2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	216
참고 2-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	218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현황	226
참고 4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228
참고 5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232
참고 6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234

**참고 1****국내 미용 관련 학과**

☞ [참고 1] 국내 미용 관련 학과는 면허발급시 편의를 위한 표이며, 이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신청인에게 졸업증명서 및 교육과정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발급

고등학교(고등기술고등학교 포함²⁾, 가나다 順)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미용예술과	16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 (구. 경기미용고등학교)	미용과	17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뷰티디자인과
3	경남미용고등학교	미용과	18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국제뷰티아트과
4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미용과	19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미용과
5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피부미용과	20	신도림미용고등학교	헤어,피부
6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미용과	21	양동고등학교	미용예술과
7	남원제일고등학교	미용마케팅과	22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토탈미용과
8	남인천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3	영주동산고등학교	피부미용과
9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미용과	24	예원여자고등학교	미용과
10	덕암정보고등학교	조리미용과 (미용전공)	25	예일미용고등학교	미용과
11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토탈뷰티과	26	예화여자고등학교	헤어메이크업과, 피부체형관리과
12	병천고등학교	미용과	27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헤어디자인과, 피부케어과
13	부경보건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8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토탈미용과
14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영상헤어디자인과	29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토탈미용과
15	부산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0	일산고등학교	뷰티디자인과

2) 금호미용예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31	전남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7	태광고등학교	뷰티미용과
32	정암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8	포항동성고등학교	미용정보과
33	정화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9	학산고등학교	헤어미용
34	제천산업고등학교	뷰티미용과	40	한국뷰티고등학교	토탈뷰티과
35	증평정보고등학교	뷰티미용과	41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미용과
36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전문대학·대학(가나다 順)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가톨릭상지대학교	미용예술과	19	구미대학교	피부미용테라피과
2	강동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용학전공
3	강릉영동대학교	미용예술과 (구. 미용과)	21	국제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4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22	군장대학교	뷰티아트과
5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23	김천대학교	뷰티아트계열 뷰티케어학과
6	경민대학교	뷰티케어과 (구. 뷰티스킨케어과)	24	김해대학교	피부미용과
7	경북대학교	뷰티아트과 의료미용과 약손명가미용과 준오헤어디자인과	25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8	경북과학대학교	메이크업전공 피부미용전공 헤어디자인전공	26	대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9	경북도립대학교	피부미용과	27	대구공업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계열
10	경북전문대학교	뷰티케어과	28	대구과학대학교	방송메이크업전공
11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 자크르데상쥬헤어과 I Belle헤어과	29	대구미래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자연계열)
12	경일대학교	뷰티학부(과)	30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13	계명문화대학교	메이크업전공 뷰티코디네이션학부 (주아름다운사람들 뷰티컨설팅전공 오무선뷰티전공 피부미용전공 헤어디자인전공 화장품코디네이터 전공(기업브랜드)	31	대구예술대학교	뷰티예술전공
14	고구려대학교	미용뷰티케어과	32	대구한의대학교	한방피부미용학과
15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피부미용전공)	33	대덕대학교	예술체육학부 뷰티과
16	광양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34	대동대학교	뷰티아트케어계열
17	광주대학교	뷰티미용학과	35	대원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18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3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37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구. 혜천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60	부산예술대학교	뷰티토탈디자인과
38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61	삼육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피부건강관리과 헤어아트과
39	대전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62	상지영서대학교	피부미용과
40	동강대학교	뷰티미용과	63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미용패션학부
41	동남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64	서라벌대학교	헤어미용복지과
42	동명대학	미용예술과	65	서영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43	동명대학교	뷰티케어학과	66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44	동명정보대학교	뷰티케어학과	67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뷰티예술계열
45	동부산대학교	뷰티아트과	68	서정대학교	피부미용과
46	동서울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69	서해대학교	피부미용과
47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70	선린대학교	피부미용과
4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피부미용과	71	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49	동원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72	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디자인학과
50	동의과학대학교	미용계열	73	세계사이버대학	피부미용뷰티학과
51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74	세종대학교	향장뷰티산업학과
52	두원공과대학교	뷰티아트과	75	송곡대학교	피부미용과 토탈뷰티디자인과
53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76	송원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54	명지전문대학	뷰티아트과 피부미용과	77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55	목포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78	송호대학교	뷰티케어과
56	백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79	수성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피부건강관리과
57	부산경상대학교	메이크업, 피부, 네일, 헤어디자인전공	80	수원과학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5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미용계열	81	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59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피부미용과 이가지헤어비즈과	82	순천제일대학교	뷰티케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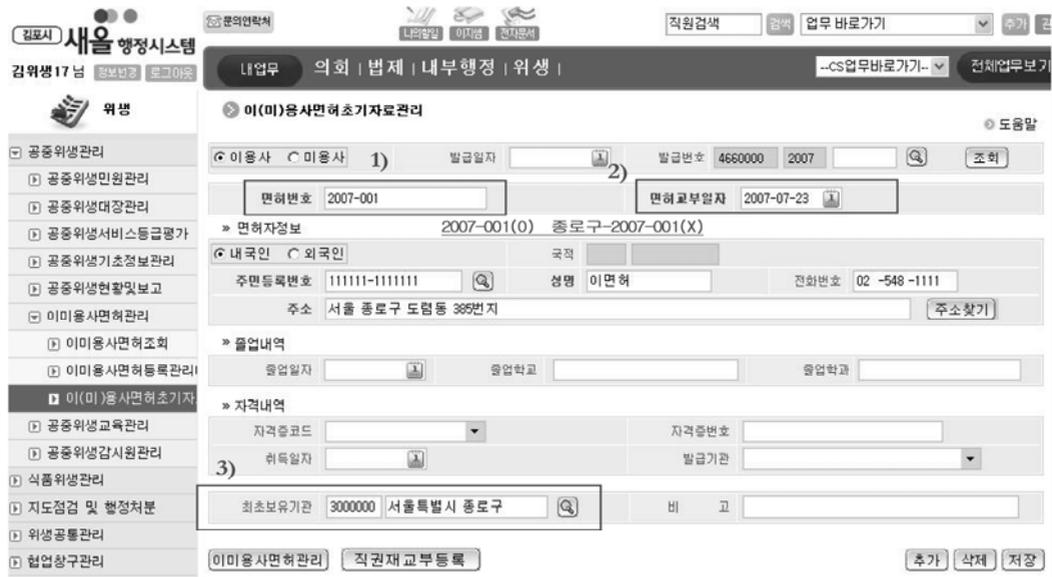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83	신구대학교	뷰티스타일링전공	105	전남도립대학교	토탈뷰티미용과
84	신라대학교	뷰티비즈니스 전공	106	전주비전대학교	미용예술과
85	신성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피부미용학과	107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부
86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108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피부미용과
87	안동과학대학교	뷰티아트과	109	조선이공대학교	뷰티아트과
88	안산대학교	뷰티아트과	110	중부대학교	미용분장학과
89	연성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111	진주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90	연암대학교 (구. 천안연암대학)	뷰티아트과	112	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91	영남이공대학교	박승철헤어과 스킨케어과	113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92	영동대학교	뷰티케어과	114	초당대학교	뷰티미용학과
93	영산대학교(산업대)	미용예술학과	115	춘해보건대학교	피부미용디자인과
94	영진사이버대학	뷰티케어학과	116	충남도립대학교 (구. 충남도립청양대학)	헤어뷰티과 (구. 뷰티코디네이션과)
95	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11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코스메틱과
96	용인송담대학교	뷰티케어과	118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과
97	우석대학교	화장품피부관리학과	119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98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120	한국영상대학교	뷰티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
99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	121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학과
100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허브테라피과	122	한영대학	뷰티코디네이션전공
101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피부관리학과	123	혜전대학교	미용계열
102	인천재능대학교	미용예술과	124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103	장안대학교	뷰티케어과	125	호산대학교 (구. 경산1대학교)	뷰티디자인과
104	전남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미용예술과	126	호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대학원(가나다 順)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7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2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8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3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향장미용학과	9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전공
4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뷰티미용학과	10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5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11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6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참고 2 | 이·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서울행정시스템 매뉴얼



- (1) 내 업무의 “위생 –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2)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면허번호부터 입력한다. 면허번호는 1)과 같이 입력한다.
 - ☞ 면허번호를 1)과 같이 입력하는 이유는 면허증 출력 시 최초보유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면허번호에 입력한 내용이 함께 면허번호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 Ex) 서울종로구 2007-00
 - ☞ 만약, 면허번호란에 시·군·구명을 입력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면, 최초보유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출력됨.
 - Ex)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2007-001
- (3) 면허교부일자는 최초면허발급일자를 입력한다.²⁾
- (4) 면허자정보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꼭 표시한다. 졸업내역과 자격내역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단, 주의사항은 졸업내역과 자격내역 입력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필수사항으로 전환된다.



- (5) 최초보유기관을 꼭 입력한다.³⁾ 최초보유기관에 최초보유시·도나 최초보유시·군·구를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 (6) 관련사항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용사면허내역이 저장된다.
- (7) **이미용사면허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용사대장화면에서 면허증을 출력할 수 있다.
- (8) **직권재교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서 재교부일자, 재교부구분, 재교부시군구, 재교부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면허관리_직권재교부등록
✕

재교부일자	재교부구분	재교부기관	재교부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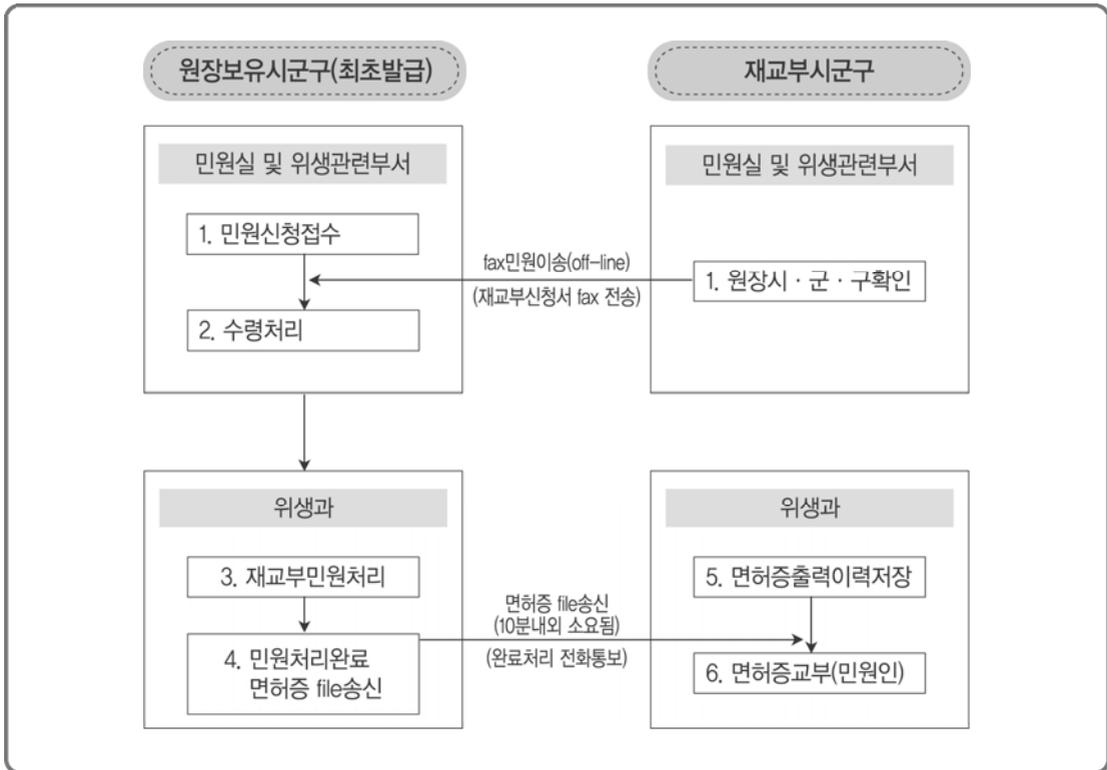
재교부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재교부(분실) <input type="radio"/> 재교부(훼손) <input type="radio"/> 기재사항변경		
재교부일자	2007-07-23		
재교부시군구	313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교부사유	부주의로 분실		



참고 2-2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절차





2

면허 원장보유(면허증 최초 발급) 시·군·구 처리매뉴얼

매뉴얼기 | 내 업무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_신청내역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_신청내역/첨부서류

이(미)용사 면허관리 | 행정처분조회 | 도움말

민원접수번호 2010 4650000 0003303 접수일자 2010-08-09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김신청3 민원인등록번호 211231-2321333 전화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도림정우빌딩 휴대폰 - -

이용사 미용사 재교부(분실) 재교부(훼손) 기재사항변경

면허내역 면허번호 2007-000022 발급일자 2007-07-11

발급기관 465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내국인 외국인 국적

졸업내역 졸업학교 한국대 졸업학과 한국학과

졸업일자 2007-07-11

* 기재사항변경 - 개명변경시에는 민원인명은 개명변경후의 성명이며, 검색해야할 성명은 개명전의 이름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일련	내외국인	전화번호	시작일자	종료일자
김미용	111111-111111	000	내국인	- -	2007-07-11	

비고

저장

민원목록 | 보완보정 | 민원결과

정상 보완보정 반려 처리

2.1. 받은민원)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_신청내역/첨부서류

- (1) 내 업무의 받은민원 리스트에서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 - 신청내역 입력”을 더블클릭하면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의 신청내역”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 (2)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 업무 중 신청내역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기존 면허를 검색 후 기본내역을 출력하여 해당내용을 민원처리하는 화면이다.
- (3) 기존 면허의 내용을 출력 후 교부사유를 선택하고 면허종류와 내, 외국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민원내역이 저장된다.
- (4) 아래 그리드에 항목 중 “첨부서류검토”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그리드로 바뀌며 해당 첨부서류를 선택할 수 있다.
- (5)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선택하고 첨부서류저장 버튼을 누른다.



서류심사내역

첨부서류 전체선택

첨부여부	일련번호	첨부서류약명	심사결과	관리일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1	면허증 원본			
<input type="checkbox"/>	2	분실 사유서			
<input type="checkbox"/>	3	주민등록표등(초)본			
<input type="checkbox"/>	4	호적등(초)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서류저장

민원결과처리

민원접수번호: 2010 4650000 0003303

민원명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유형	교부
민원인	김신청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도렴정우빌딩	
전화번호		핸드폰		접수자 김민원03
접수일시	2010-08-09 15:34	처리기한	2010-08-10	
건별수수료	3000	수수료합계	3000	

단계별결정사항

현지조사일	<input type="button" value="↓"/>	조사결과	
실무종합개최일	<input type="button" value="↓"/>	개최결과	
민원조정위원회	<input type="button" value="↓"/>	개최결과	
기관장결정일	<input type="button" value="↓"/>	결정내역	

민원결과

처리결정내용	해결	원결일자	2010-08-09 15:41
처리담당자	김위생15 SNT15	처리책임자	방용희 BYH95600
불가반려시			
처리대안			
최종처리내역			
최종처리근거			

*처리내역과 처리근거 등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면 공개대상 민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내역을 확인 한 후 민원결과버튼을 선택하여 민원결과를 해결로 등록한다.
- (7)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_신청내역첨부서류화면으로 돌아가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민원처리를 한다.



2.2. 받은민원>이(미)용사면허재교부신청_면허증전송 및 이력조회

메뉴닫기
프로세스정보

내업무
이(미)용사면허신청_신청내역_면허증_출력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_면허증출력
이(미)용사 면허관리
도움말

민원접수번호	2010 4650000 0003303	접수일자	2010-08-09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명	김신청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도렴정우빌딩		민원등록번호	211231-2321333

이종사
 미용사
 재교부(분실)
 재교부(훼손)
 기재사항변경

면허내역	면허번호	2007-000022	발급일자	2010-08-09
	발급기관	465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내국인
 외국인
 국적

출업내역	출업학교	한국대	출업일자	2007-07-11
	출업학과	한국학과		

비고

자격내역

자격종	자격증번호	취득(합격)일자	발급기관
미용기능사	F08838381	2007-07-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이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시작일자	종료일자	전화번호	휴대번호
김미용	111111-1111111	내국인	2007-07-11		-	-

[서울광장서비스요청](#)
[02\) 2076-5800](#)
[사이버이용자협의회](#)

- (1) 내 업무의 받은민원 리스트에서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 단계 인가(허가)증발급을 더블클릭하면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의 면허증출력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 (2)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 업무 중 면허증출력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신청단계와 서류심사에서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는 화면이다.



(3) 면허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출력서식조정-면허증

면허증 내역	담당부서	위생과111111		
	책임자	김책임 1		
	담당자	김위생 15		
	연락처	02- 111-3333		
* 로그인 사용자단위로 담당자내역이 저장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담당자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출력 서식 및 관인	담당자 출력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용사 직종 출력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식저장제외
	태두리 출력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치	
	전자 이미지 관인 출력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력위치조정	<input type="radio"/> 기본값 <input checked="" type="radio"/> 직접설정
	전자이미지관인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민원용관인 <input type="radio"/> 사무용관인		좌,우 조정 1,6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인직접선택		상,하 조정 2,231
	전자관인선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기관장	기 관 장 7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4) 출력서식에 대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면허증파일 관외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전송처리 화면이 나타난다.

관외 이(미)용사 재교부 면허증 파일전송처리

관외 이(미)용사 재교부 면허증 전송처리

재교부출력기관

사용자파일명	파일크기	파일유형	등록일시	등록자

파일갯수: 파일총크기(by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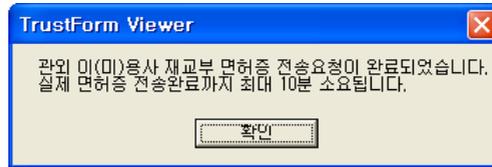
<< 전송처리 절차 >>
 1. 재교부출력기관에서 전송보낼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2. 첨부된 면허증의 내용을 확인한다.
 3. 면허증 파일 전송을 눌러서 면허증을 전송한다.



- (5) 재교부 출력기관(면허증을 전송할 시·군·구)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교부하려는 면허증이 PDF파일로 저장되며 면허증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송 확인 팝업이 출력된다.



- (6) 전송할 재교부출력 시·군·구를 확인하여 전송한다.



- (7) 면허증 파일 전송은 최대 10분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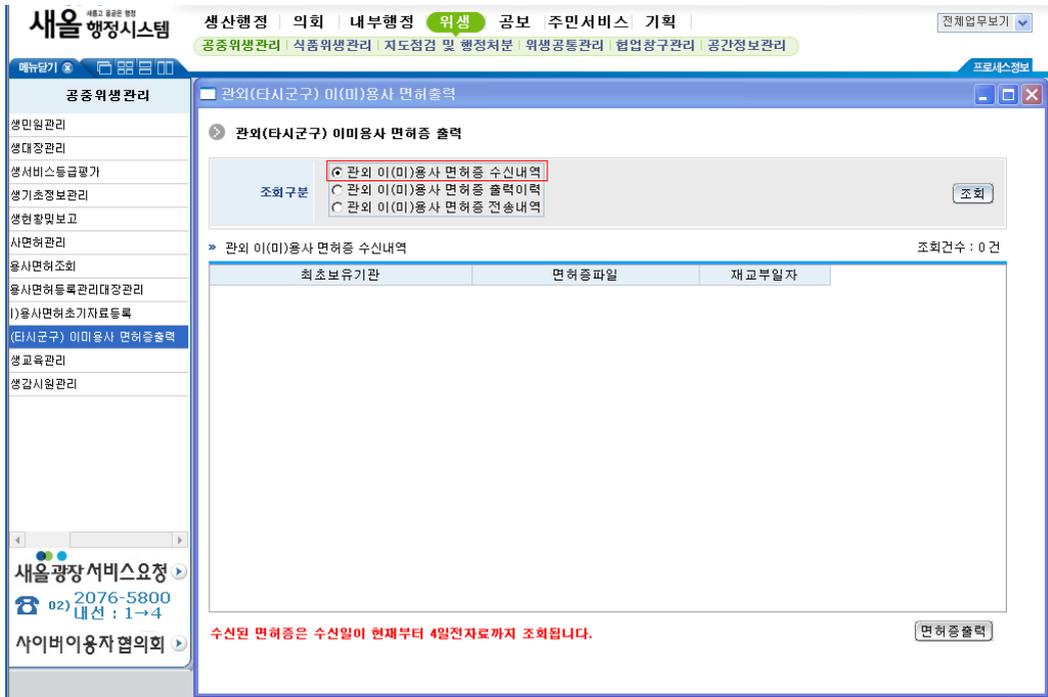




- (8) 공중위생관리> 이미용사면허관리> 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 면허증출력 화면에서
- (8)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전송내역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타 시·군·구 (재교부 출력시·군·구)로 면허증을 전송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재교부출력 시·군·구 처리 매뉴얼

3.1 공중위생관리>이(미)용사면허관리>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면허증출력



- (1) 공중위생관리> 이미용사면허관리> 관외(타 시·군·구)이미용사 면허증출력 화면에서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수신내역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원장보유 시·군·구로부터 면허증 파일을 수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2) 민원인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면허증을 선택한 후 면허증 출력버튼을 누르면 출력이력 등록화면이 나타난 후 면허증이 미리보기 형식으로 출력된다.



(3) 관외 이(미)용사 면허증 출력이력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전송받은 면허증의 출력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현황

연도별,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개소, 2016.12.31기준)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2011	202,365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442	303	440
2012	205,825	30,573	8,033	20,219	103,670	30,949	11,178	418	320	465
2013	209,376	30,640	7,818	19,678	107,761	30,286	11,986	399	331	477
2014	215,062	30,746	7,649	19,239	113,869	29,512	12,821	387	347	492
2015	220,750	30,888	7,487	18,734	120,234	28,661	13,503	367	355	521
2016	228,756	30,971	7,288	18,304	129,012	27,832	14,189	350	336	474

2016년 시·도별,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 개소, 2016.12.31기준)

업종별 시·도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합계	228,756	30,971	7,288	18,304	129,012	27,832	14,189	350	336	474
서울	39,881	3,248	1,027	2,840	24,081	5,456	3,183	27	4	15
부산	17,052	2,234	921	1,465	9,548	1,906	917	28	16	17
대구	11,804	982	351	1,115	7,224	1,541	550	11	15	15
인천	11,292	1,301	248	787	6,823	1,515	588	7	11	12
광주	7,554	806	221	539	4,427	1,087	442	11	4	17
대전	7,260	865	153	526	4,199	921	569	11	2	14
울산	5,545	761	203	428	3,196	539	399	11	3	5
세종	673	87	14	61	334	75	94	2	3	3
경기	46,558	4,707	1,015	3,170	28,224	5,921	3,088	63	143	227
강원	9,035	2,321	309	703	4,242	883	537	17	10	13
충북	7,457	1,092	195	643	4,135	914	387	29	34	28
충남	10,109	2,275	255	941	4,947	1,135	504	15	17	20
전북	9,684	1,528	346	871	5,110	1,152	641	18	10	8
전남	10,022	1,963	408	1,117	4,708	1,224	562	23	7	10
경북	14,209	2,594	558	1,408	7,220	1,575	757	33	24	40
경남	16,498	2,991	912	1,457	8,742	1,499	813	36	26	22
제주	4,123	1,216	152	233	1,852	489	158	8	7	8



연도별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개소, 2016.12.31기준)

연도	총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2011	16,703	3,483	12,604	94	169	262	91
2012	17,183	3,611	12,961	97	168	250	96
2013	17,506	3,666	13,208	101	171	258	102
2014	17,791	3,822	13,305	109	178	262	115
2015	17,949	3,867	13,426	108	178	258	112
2016	18,044	3,867	13,527	105	177	259	109

2016년 시·도별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개소, 2015.12.31기준)

시설별 시·도별	총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합계	18,044	3,867	13,527	105	177	259	109
서울	7,961	1,617	6,127	32	99	74	12
부산	762	200	504	12	21	20	5
대구	544	126	396	5	3	12	2
인천	910	187	697	2	4	12	8
광주	521	175	322	1	6	14	3
대전	972	257	694	6	2	10	3
울산	205	34	163	1	2	2	3
세종	5	4	0	0	0	0	1
경기	3,803	585	3,118	26	33	22	19
강원	353	146	184	2	0	14	7
충북	146	39	87	2	0	10	8
충남	199	46	122	1	0	22	8
전북	448	118	302	2	3	15	8
전남	147	57	71	4	0	7	8
경북	171	61	89	1	0	15	5
경남	597	158	413	4	4	10	8
제주	300	57	238	4	0	0	1



참고 4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I.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자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II. 가이드라인 개요

1.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아울러 이·미용업자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하여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가이드라인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옥외”라 함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 나.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의미한다.
- 다. “품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옥외가격표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 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 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할 수 있다.
-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 라.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한다

-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cm×60cm)이내
 - 서울시(한 폭이 20cm 이내)와 같이 예외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것
 - 2) 이동식 간판(배너 또는 입간판)으로 표시(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은 설치 불가
 - 3) 건물을 이용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도조례 규정)
 -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등



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한다.

4. 업종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용업

- 1)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일반)

- 1)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미용업(피부)

-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피부)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미용업(손톱·발톱)

-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미용업(화장·분장)

-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미용업(종합)

- 1)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예시 : 미용업(일반)의 경우〉

- 커트 : 1만원 ~ 10만원
 - 염색 : 3만원 ~ 10만원
 - 펌 : 5만원 ~ 20만원
 - 두피 스케일링 : 5만원 ~ 20만원
- ※ 모발길이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유의 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기존 메뉴판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5.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 5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1

최종 지불가격 게시

- 이·미용업소의 상세 가격 표시 및 소비자 중심의 가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종지불가격을 게시
 - 대표적 추가 요금 항목(예: 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 및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최종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 성별(남·여), 신분(학생, 일반), 할인행사 등 특정 대상·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 시,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을 동시에 표기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동 방지
 - * (예시) 펴 50,000원, 컷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
 - 펴 등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부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의 가격 동시 표기를 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 * (예시) 펴 30,000원(일반펴), 200,000원(믹스펴)

2

최종 지불요금표 사전 제공

- 소비자 비용선택권 강화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에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시
 - * 상세 주문내역서 양식은 업소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 가능
 - 미용서비스 제공전 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 구성(서비스 내용, 가격 등)에 대한 합의필요

〈내역서 포함사항〉

- 최종 결제 금액(합계)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 염색제, 펄제, 영양제 등 제품 사용 시 사용제품명 명기
- 할인을, 할인쿠폰 적용 여부

〈 (예시) 상세주문내역서 〉

상세주문내역서			
날짜 :			
고객명	박○○		
담당자	이△△		
서비스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매직세팅펄	100,000	20,000	기장추가
		20,000	A사 펄제
염색	50,000	10,000	기장추가
		10,000	B사 염색제
모발클리닉	40,000		
할인내역			
합계	250,000원		
매니저	김□□		

3 시행일자

○ '16.7.15부터 시도 및 시군구 관할 영업소에 적용

**참고 6****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1****시·도 공중위생 담당부서 주소록**

구 분	부서명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3 (02-768-8853)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47545)	051-888-3394 (051-888-3379)
대구광역시청	식품관리과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648(41911)	053-803-4113 (053-803-4959)
인천광역시청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가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내방로 111(치평동)(61945)	062-613-4380 (613-4369)
대전광역시청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35242)	042-270-4892 (042-270-4869)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41 (052-229-2820)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16444)	031-8008-3682 (031-8008-3699)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28515)	043-220-3163 (043-220-3169)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1 (041-635-3063)
전북도청	건강안전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58564)	061-286-5771 (061-286-4736)
경북도청	식품의약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2 (054-880-3849)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63122)	064-710-2943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3262 044-300-3224 (044-300-3219)



2

서울특별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3 (02-768-8853)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0(03035)	02-2148-3541 (02-2148-5838)
중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04611)	02-3396-5655 (02-3396-8896)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04390)	02-2199-8041 (02-2199-5810)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04706)	02-2286-7150 (02-2286-7124)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5026)	02-450-1925 (02-3425-1714)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565)	02-2127-4743 (02-3299-2641)
중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043)	02-2094-0784 (02-2094-0769)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751)	02-2241-6181 (02-2241-6611)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1145)	02-901-7631 (02-901-7609)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01395)	02-2091-4472 (02-2091-6362)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01689)	02-2116-4326 (02-2116-4645)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3384)	02-351-8181 (02-351-5681)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3718)	02-330-8901 (02-330-8987)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03937)	02-3153-9186 (02-3153-9199)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08095)	02-2620-4894 (02-2620-4409)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7560)	02-2600-5829 (02-2620-0502)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08299)	02-860-3239 (02-860-2652)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08611)	02-2627-2636 (02-2627-2101)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7260)	02-2670-4702 (02-2670-4875)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06963)	02-820-9415 (02-820-9498)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8832)	02-879-7281 (02-879-7853)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8037 (02-2155-8386)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6088)	02-3423-7081 (02-3423-8901)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5552)	02-2147-3447 (02-2147-389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5397)	02-3425-6641 (02-3425-7268)



3

부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47545)	051-888-3394 (051-888-3379)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48926)	051-600-4402 (051-600-4389)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9247)	051-240-4402 (051-240-4389)
동구청	청소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수정동)(48781)	051-440-4411 (051-440-4439)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49011)	051-419-4404 (051-419-4729)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	부산광역시 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47193)	051-605-4405 (051-605-4419)
동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복천동) (47808)	051-550-4401 (051-550-4389)
남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48452)	051-607-4402 (051-607-4389)
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46504)	051-309-4722 (051-309-4389)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48095)	051-749-4415 (051-749-4389)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당리동) (49328)	051-220-4402 (051-220-4389)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46274)	051-519-4402 (051-519-4389)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46702)	051-970-4427 (051-970-4389)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47605)	051-665-4405 (051-665-4389)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48305)	051-610-4411 (051-610-4409)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46985)	051-310-4411 (051-310-4389)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46077)	051-709-4412 (051-709-4389)



4 대구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구시청	식품관리과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648(41911)	053-803-4113 (053-803-4959)
중구청	위생과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1(41908)	053-661-2752 (053-661-2759)
동구청	위생과	대구시 동구 아양로207(41185)	053-662-2752 (053-662-2759)
서구청	위생과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257(41777)	053-663-2752 (053-663-2759)
남구청	위생과	대구시 남구 이천로51(42429)	053-664-2753 (053-664-2759)
북구보건소	위생과	대구시 북구 성북로49(41550)	053-665-2751 (053-665-2759)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213(42086)	053-666-2757 (053-666-2759)
달서구청	위생과	대구시 달서구 학상로45(42731)	053-667-2753 (053-667-2759)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33(42974)	053-668-2753 (053-282-7378)



5

인천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인천광역시청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중구청	위생환경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80(22315)	032-760-7352 (032-760-6469)
동구청	환경위생과	인천 동구 금곡로 67(22556)	032-770-6531~4 (032-770-6509)
남구청	위생과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22169)	032-880-7438 (032-880-8734)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21967)	032-749-7951~3 (032-749-7959)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21589)	032-453-2630 (032-453-2759)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21359)	032-509-6822 (032-509-7670)
계양구청	위생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21067)	032-450-5432~5 (032-551-5744)
서구청	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22726)	032-560-4320 (032-560-2756)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강화읍 강화대로 394(23031)	032-930-3834~5 (032-930-3636)
옹진군보건소	위생지도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2193)	032-899-3160~3 (032-899-3129)

**6** 광주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내방로 111(치평동)(61945)	062-613-4380 (613-4369)
동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서 동구 서남로 1(61466)	062-608-2451 (608-2499)
서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33(61928)	062-360-7592 (639-7558)
남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남구 보선로 1(61687)	062-607-4440 (607-4405)
북구청	위생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61187)	062-410-6691 (510-4152)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62430)	062-960-8508 (960-8809)

7 대전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전광역시청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35242)	042-270-4892 (042-270-4869)
동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34691)	042-251-4653 (042-224-6163)
중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34939)	042-606-6512 (042-712-6499)
서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35238)	042-611-5572 (042-611-8621)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34139)	042-611-2422 (042-611-2431)
대덕구청	청소위생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34443)	042-608-6882 (042-608-3835)



8

울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울산광역시	식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44675)	052-229-3541~4 (052-229-2820)
중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44475)	052-290-3731~5 (052-290-3709)
남구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3, 달동(44701)	052-226-5722~4 (052-226-5262)
동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44021)	052-209-3571~5 (052-209-3549)
북구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44248)	052-241-7781~4 (052-241-7769)
울주군	안전위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옥동(44663)	052-229-7701~4 (052-229-7689)



9 경기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16444)	031-8008-3682 (031-8008-3699)
경기도 북부청	보건위생담당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11780)	031-8030-3264 (031-8030-3259)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16490)	031-228-3235 (031-228-2396)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16295)	031-228-5328 (031-228-5595)
수원시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16626)	031-228-6324 (031-228-6595)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매향동) (16255)	031-228-7394 (031-228-7595)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407(매탄동) (16545)	031-228-8923 (031-228-8849)
성남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13437)	031-729-3134 (031-729-3109)
성남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신흥동) (13259)	031-729-5310 (031-729-5525)
성남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성남동) (13371)	031-729-6310 (031-729-6525)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수내동) (13594)	031-729-7310 (031-729-7525)
용인시청	위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17019)	031-324-2230 (031-324-2139)
용인시 처인구청	공원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17049)	031-324-5300 (031-324-5439)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16963)	031-324-6300 (031-324-6362)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 (16835)	031-324-8300 (031-324-8419)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14547)	032-625-4302 (032-625-4309)
부천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24번길 25(심곡동) (14639)	032-625-5031 (032-625-563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부천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14566)	032-625-5253 (032-625-5239)
부천시 중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342(중동)(14626)	032-625-5471 (032-625-5468)
부천시 중4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209번길 15(중동)(14537)	032-625-5631 (032-625-5619)
부천시 상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95(상동)(14589)	032-625-5851 (032-625-5859)
부천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249번길 19(심곡본동) (14714)	032-625-6033 (032-625-6419)
부천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33(소사본동)(14757)	032-625-6221 (032-625-4369)
부천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38(괴안동)(14697)	032-625-6352 (032-625-6409)
부천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25(여월동)(14463)	032-625-7031 (032-625-7019)
부천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252번길 88(오정동) (14434)	032-625-7191 (032-625-7719)
안산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15335)	031-481-2836 (031-481-3198)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15585)	031-481-5232 (031-481-5575)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15396)	03-481-6232 (031-481-6575)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 (15648)	031-481-6977 (031-481-6999)
안양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14053)	031-8045-5616 (031-8045-6519)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안양동) (14034)	031-8045-3325 (031-8045-6605)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14047)	031-8045-4313 (031-8045-4429)
화성시청	위 생 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18274)	031-369-2233 (031-369-1613)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화 성 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진안동)(18401)	031-369-4156 (031-369-4907)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17901)	031-8024-3892 (031-8024-3859)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서정동)(17730)	031-8024-6360 (031-8024-6329)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17816)	031-8024-8290 (031-8024-8259)
시흥시 보건소	식생활정책과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대야동)(14904)	031-310-2233 (031-310-2873)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10109)	031-980-2235 (031-980-2229)
광명시청	생활위생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14234)	02-2680-5489 (02-2680-2623)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12738)	031-760-4722 (031-760-1457)
군포시청	위생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15829)	031-390-0851 (031-390-0259)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18132)	031-8036-7647 (031-8036-8917)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증포동) (17353)	031-644-4042 (031-634-4000)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17596)	031-678-5733 (031-673-9424)
의왕시청	청소위생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6075)	031-345-2823 (031-345-2849)
하남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12951)	031-790-5616 (031-793-0470)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4(상동)(12628)	031-887-2655 (031-887-3610)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12554)	031-770-2234 (031-770-2835)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806)	02-3677-2234 (02-2150-1514)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고양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주교동) (10460)	031-8075-3317 (031-8075-4919)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화정동) (10497)	031-8075-5272,3 (031-8075-9824)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10409)	031-8075-6283 (031-8075-9887)
고양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대화동) (10380)	031-8075-7273,4 (031-8075-9949)
남양주시청	위생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12232)	031-590-2235 (031-590-2339)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총무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25 B동(일석빌딩)(12126)	031-590-8332 (031-590-8319)
의정부시청	위생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11622)	031-828-4373 (031-828-4669)



10

강원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강원도	건강증진식품과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춘천시 중앙로 135(24358)	033-250-4505 (033-256-4010)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원주시 원일로 139(일산동)(26417)	033-737-4033 (033-737-4827)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강릉시 남부로 17번길38(25604)	033-660-3022 (033-660-3025)
동해시보건소	동해시보건소	동해시 천곡로 100-2(25769)	033-539-8149 (033-530-2828)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태백시 태백로 21(26023)	033-550-2402 (033-550-298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033-639-2684 (033-639-2380)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삼척시 척주로 76(25929)	033-570-3325 (033-570-3138)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25121)	033-430-2654 (033-430-2609)
횡성군보건소	횡성군보건소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91(25224)	033-340-5691 (033-340-5608)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26235)	033-370-2248 (033-370-2314)
평창군청	환경과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25374)	033-330-2312 (033-330-2334)
정선군보건소	정선군보건소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26127)	033-560-2312 (033-563-4000)
철원군보건소	철원군보건소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24037)	033-450-4237 (033-452-8426)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24125)	033-440-2841 (033-440-2590)
양구군보건소	양구군보건소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24522)	033-480-2312 (033-480-2546)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8(24631)	033-460-2215 (033-460-2219)
고성군보건소	고성군보건소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24736)	033-680-3951 (033-680-3549)
양양군보건소	양양군보건소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25031)	033-670-2312 (033-670-2558)



11

충청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28515)	043-220-3163 (043-220-3169)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28527)	043-201-1963 (043-201-1989)
청주시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171-3(28527)	043-201-5312 (043-201-5349)
청주시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28565)	043-201-6312 (043-201-6349)
청주시홍덕구청	환경위생과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 88(28426)	043-201-7312 (043-201-7349)
청주시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28488)	043-201-8312 (043-201-8349)
충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충주시 으뜸로 21(27339)	043-850-3461 (043-850-3409)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제천시 의림대로 242(27152)	043-641-3185 (043-641-3159)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28943)	043)540-3272 (043-543-2595)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29032)	043-730-3424 (043-731-1986)
영동군청	생활지원과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29140)	043-740-3794 (043-740-3759)
증평군청	환경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27927)	043-835-3632 (043-835-3609)
진천군청	환경위생과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27832)	043-539-3422 (043-537-0475)
괴산군청	문화관광과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28026)	043-830-3473 (043-834-3018)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27690)	043-871-3836 (043-871-1919)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27010)	043-420-2672 (043-420-2659)



12 충청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1 (041-635-3063)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31162)	041-521-5416 (041-521-2339)
동남구청	위생청소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문화동, 동남구청)(31131)	041-521-4321 (041-521-4229)
서북구청	위생청소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서북구청)(31049)	041-521-6324 (041-521-6229)
공주시보건소	보건과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32572)	014-840-8782 014-854-4101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33483)	041-930-3813 (041-930-3760)
아산시청	위생담당관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31512)	041-540-2635 (041-540-2456)
서산시청	민원위생과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31974)	041-660-2620 (041-660-2620)
논산시보건소	건강위생과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32993)	041-746-8145 (041-746-8019)
계룡시청	공중위생팀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32823)	042)840-2872 (042-840-2459)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충남 당진시 시청 14로 1(31773)	041-350-3510 (041-350-3559)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충청남도 금산읍 군청길 13(32733)	041-750-2505 (041-751-6273)
부여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33(33168)	041-830-2314 041-830-2299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33638)	041-950-4312 041-950-4545
청양군	민원봉사실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33323)	041-940-2183 (041-940-2510)
홍성군보건소	위생분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36번길 30(32248)	041-630-9020 (041-630-9690)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32435)	041-339-7484 (041-339-7459)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32144)	041-670-2068 041-670-2517


13 전라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북도청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주시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54994)	063-281-2372 (063-281-2607)
전주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55051)	063-220-5327 (063-220-5447)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54937)	063-270-6325 (063-279-6909)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54078)	063-454-3412 (063-452-8165)
익산시청	식품위생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54622)	063-859-5451 (063-859-5083)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북 정읍시 수성1로 61(56177)	063-539-6133 (063-539-6531)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55766)	063-620-7934 (063-631-5931)
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54385)	063-540-1384 (063-540-1358)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55352)	063-290-2704 (063-290-2060)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55434)	063-430-2519 (063-430-2697)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55517)	063-320-2329 (063-320-2248)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55634)	063-350-2556 (063-350-2339)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55927)	063-640-3162 (063-640-3117)
순창군청	민원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56039)	063-650-1443 (063-650-1429)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56428)	063-560-2887 (063-560-2869)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56305)	063-580-4418 (063-580-4854)



14

전라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58564)	061-286-5771 (061-286-4736)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58714)	061-270-8944 (061-270-3597)
여수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59674)	061-659-4228 (061-659-5839)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57938)	061-749-6836 (061-749-4683)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58274)	061-339-2148 (061-339-2833)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57741)	061-797-4052 (061-797-4151)
담양군청	관광레저과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57339)	061-380-3157 (061-380-3579)
곡성군청원	보건의료원	곡성군 곡성로 854(57542)	061-360-7593 (061-360-8597)
구례군청	사회복지과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7656)	061-780-2326 (061-780-2582)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고흥군 고흥읍 홍양길 40(59535)	061-830-5250 (061-830-5576)
보성군청	주민복지실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59455)	061-850-5323 (061-850-5329)
화순군청	인허가과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58112)	061) 379-3493 (061-379-3499)
장흥군청	보건소	장흥군 장흥읍 홍성로 49(59327)	061-860-0312 (061-860-0597)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59228)	061-430-3195 (061-430-3149)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59028)	061-530-5310 (061-530-5577)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58415)	061-470-2796 (061-470-2582)
무안군청	보건소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58532)	061-450-5019 (061-450-5134)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57149)	061-320-3313 (061-320-9310)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57035)	061-350-5564 (061-350-536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57219)	061-390-7343 (061-390-7585)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59124)	061-550-5442 (061-550-5409)
진도군청	보건소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58922)	061-540-6022 (061-540-6081)
신안군청	보건소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58827)	061-240-8436 (061-240-8892)



15 경상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북도청	식품의약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2 (054-880-3849)
포항시청	식품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054-270-3874 (054-270-3270)
포항시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37832)	054-270-6183 (054-270-6513)
포항시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37705)	054-240-7183 (054-240-7513)
경주시청	위생과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38102)	054-779-8588 (054-760-7486)
김천시청	보건위생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39532)	054-421-2778 (054-420-6956)
안동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36694)	054-840-6622 (054-840-5919)
구미시청	위생과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39281)	054-480-5542 (054-550-5499)
영주시청	관광산업과	경북 영주시 시청로 1(36132)	054-639-6636 (054-639-6609)
영천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38856)	054-330-7996 (054-330-6439)
상주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37183)	054-537-8725 (054-532-4000)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36982)	054-550-6171 (054-550-6219)
경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38616)	053-810-6341 (053-811-7441)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39013)	054-380-6173 (054-380-6145)
의성군청	유통축산과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37337)	054-830-6170 (054-830-6299)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37427)	054-870-6173 (054-870-3000)
영양군청	민원봉사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36537)	054-680-6791 (054-680-676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36429)	054-730-6174 (054-730-6189)
청도군청	민원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38330)	054-370-2171 (054-370-6149)
고령군청	민원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40138)	054-950-6694 (054-950-6149)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40022)	054-930-6724 (054-930-6709)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39888)	054-979-6675 (054-979-6679)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36822)	054-650-8062 (054-650-6780)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36239)	054-679-6192 (054-679-6179)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36323)	054-789-6692 (054-789-6287)
울릉군청	환경산림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40222)	054-790-6171 (054-790-6189)



16

경상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창원시청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51435)	055-225-3604 (055-225-4722)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815번길 8(51168)	055-212-4563 (055-212-4069)
창원시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51539)	055-272-4563 (055-225-4868)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51736)	055-220-4563 (055-225-4898)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51323)	055-230-4563 (055-225-4928)
창원시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51629)	055-548-4563 (055-225-4958)
진주시청	위생과	진주시 동진로155(52789)	055-749-8682~4 (055-749-2990)
통영시	보건위생과	통영시 안개4길 108(53038)	055-650-6031 (055-650-6199)
사천시청	환경위생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52539)	055)831-3611 055)831-6025
김해시청	위생과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50924)	055)330-4468~70 055)328-6239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경남 김해시 부곡로 57(50990)	055)330-4903~4 055)330-6819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밀양시 밀양대로 2047(50420)	055-359-5177 (055-359-5736)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거제시 계룡로 125(53257)	055-639-3984 (055-639-3494)
양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양산시 삼량로 169(50629)	055-392-5194 (055-392-5199)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52140)	055-570-2150 (055-570-2041)
합안군청	종합민원봉사과	합안군 가야읍 말산로 1(52043)	055-580-2284 (055-580-2238)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50317)	055-530-1164 (055-530-1610)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52943)	055-670-2735 (055-670-2199)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52413)	055-860-8741 (055-860-8799)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팀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52333)	055-880-2352 (055-880-6620)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52221)	055-970-7153 (055-970-7109)
함양군보건소	위생관리팀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50039)	055-960-5335 (055-964-9024)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50132)	055)940-3334 (055-940-3288)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50231)	055-930-3316 (055-930-3299)



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63122)	064-710-2943 (064-710-2919)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길 10(이도이동)(63208)	064-728-2611 (064-728-2619)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63584)	064-760-2421 064-760-2431 (064-760-6019)

1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세종특별자치시청	생활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3262 (044-300-3219)

2017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발행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 202-2845, 2846, 2847, 2848
팩스 044) 202-3939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